



육아휴직통계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20.(수) 12:00 배포 2023. 12. 19.(화) 15:00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2-481-1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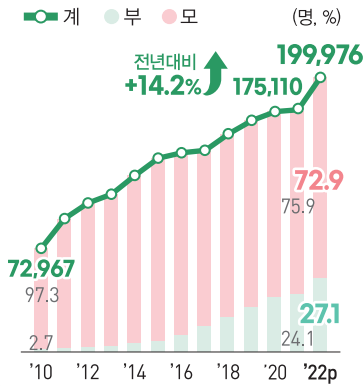
일 러 두 기

- 육아휴직통계는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20년 개발되었습니다.
- 본 통계는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하였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로 공표합니다.
 - 수록된 2022년 수치는 잠정치(p)이고, 1년 후 확정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는 확정치보다 적게 집계되오니, 분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관련 지표는 고용보험자료만을 활용하므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父)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집계되어있어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누리집(<https://kostat.go.kr>)에서,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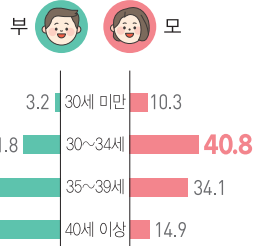


2022년 육아휴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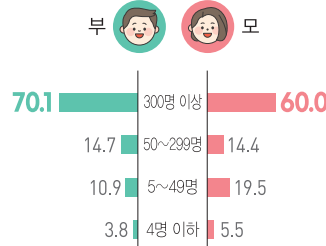
전체 육아휴직자 수 (시작일 기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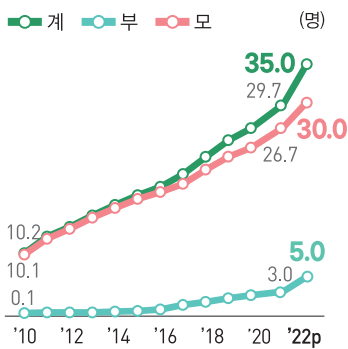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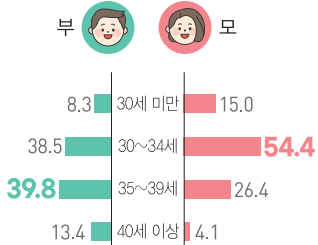
산업대분류별(5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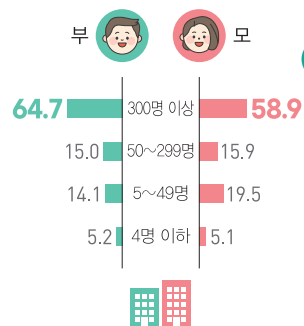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시작일 기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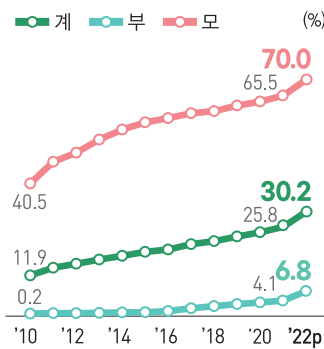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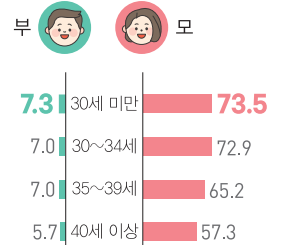
산업대분류별(5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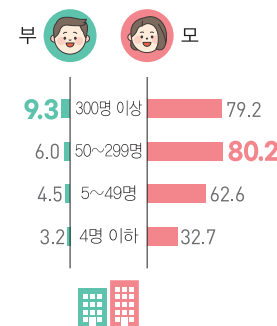
출생아 부모의 특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시작일 기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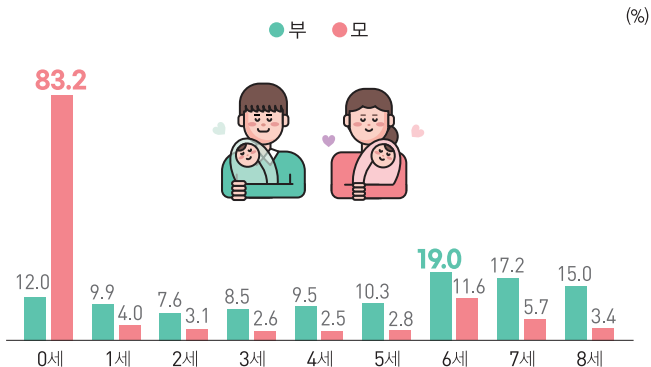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산업대분류별(5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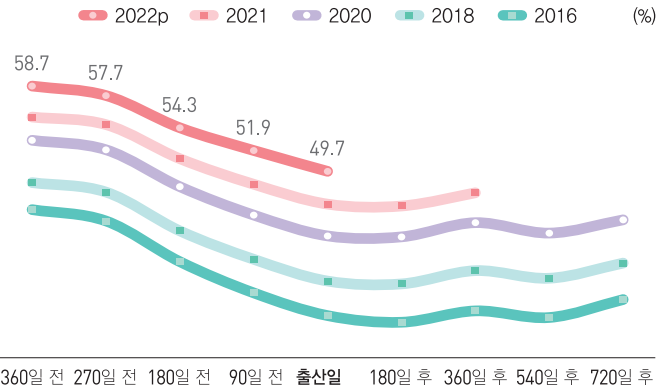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한자녀 부모*)



* 한자녀 부모: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한 번이라도 육아휴직을 한 부모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



목 차

□ 2022년 육아휴직통계(요약)	1
--------------------------	---

□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	4
나. 연령별 비중	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6
라. 종사 산업별 비중	7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8
나. 연령별 비중	9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10
라. 종사 산업별 비중	11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12
나. 연령별 비중	13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14
라. 종사 산업별 비중	15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	16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17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18
라.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19

3. 전 기간(2013~2022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20
나. 육아휴직 분할 사용 비중	21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22

5. 2021년 출산휴가자

가. 2021년 출산휴가자 수	23
나. 연령별 비중	2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25
라. 종사 산업별 비중	26

□ 통계표

28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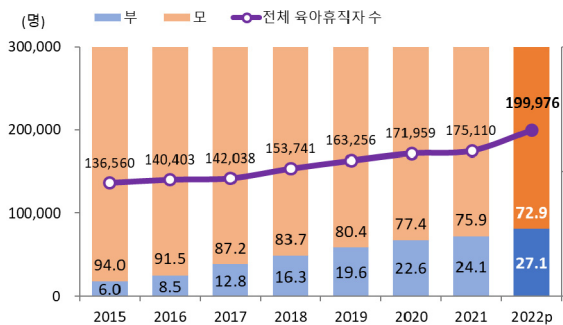
1. 육아휴직통계 개요	56
2. 자주하는 질문	57
3. 한국표준산업분류	65

2022년 육아휴직통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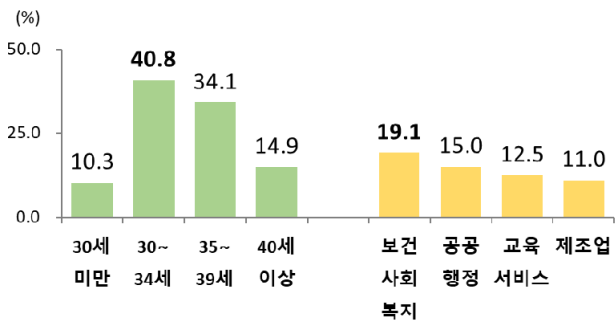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임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24,866명) 증가한 19만 9,976명임(4쪽)
- 육아휴직자의 27.1%는 부(父)이고,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임(4쪽)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0.8%)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서 가장 높음(5쪽, 7쪽)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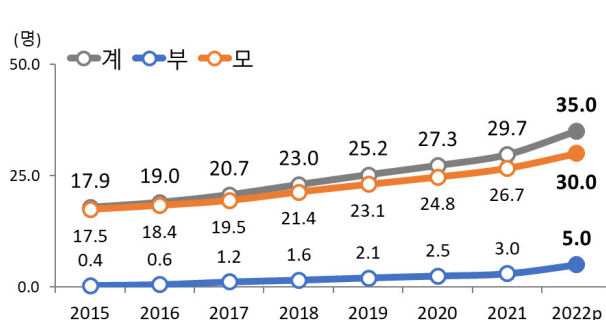
<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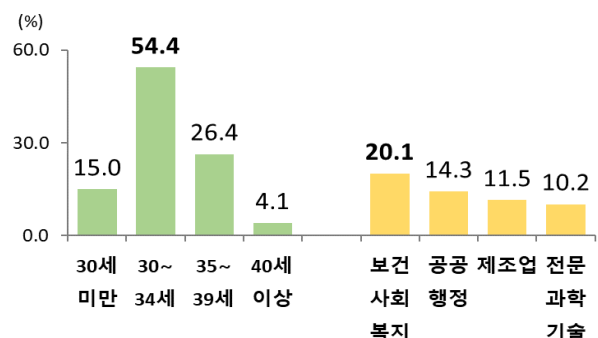
'22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

-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8만 7,092명임(8쪽)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8쪽)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4.4%)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에서 가장 높음(9쪽, 11쪽)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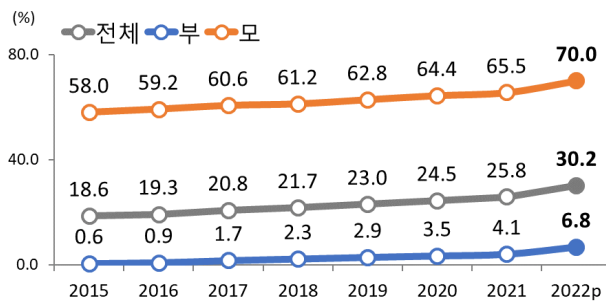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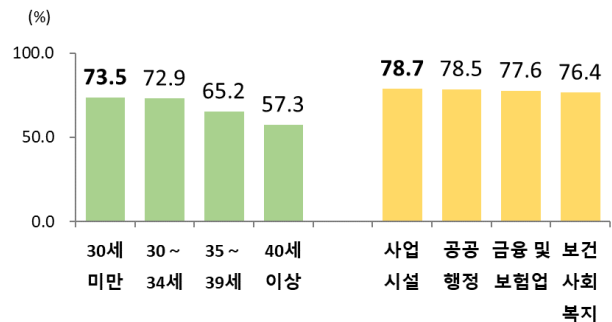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대비 4.3%p 상승한 30.2%임

-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6.8%, 모(母) 70.0%로 전년대비 부(父)는 2.7%p, 모(母)는 4.6%p 상승함(16쪽)
- 출생아 모(母)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73.5%)에서 가장 높고,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8.7%)에서 가장 높음(17쪽, 19쪽)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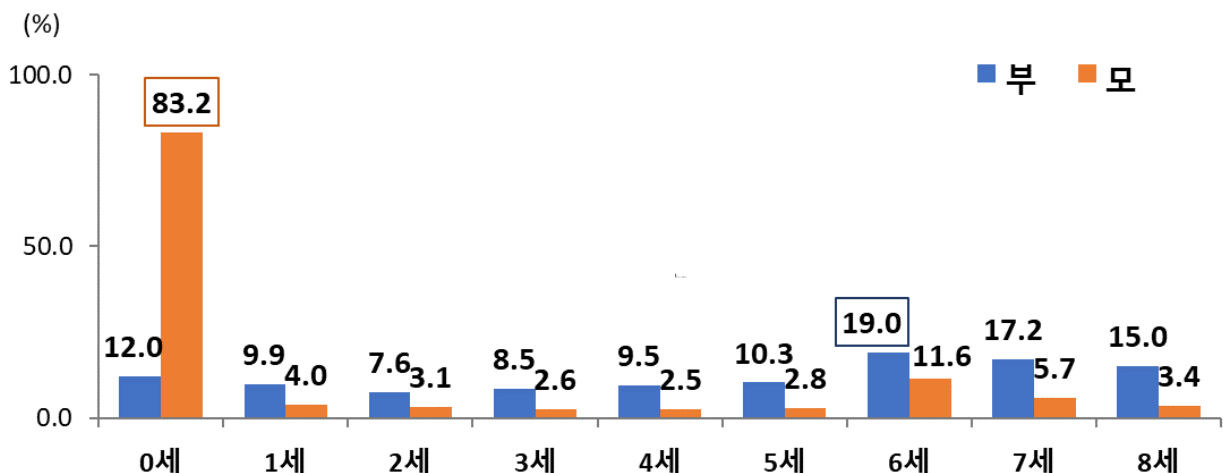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13년에 출산하여 '22년까지 한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모(母)는 자녀 나이 0세(83.2%) 때, 부(父)는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년 출생아 한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비중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19.0%) 때, 모(母)는 0세(83.2%) 때 가장 많이 사용함(20쪽)
- *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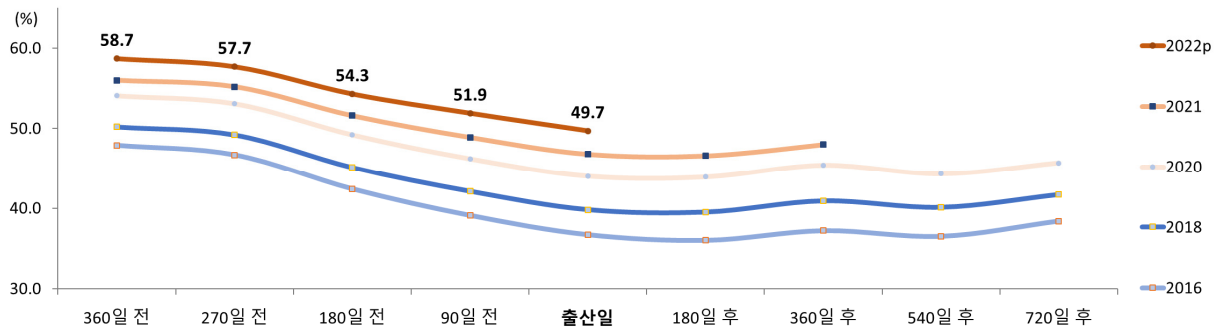
< (한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고, 출산 360일 전보다 9.0%p 낮음

-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58.7%)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0%p 낮아짐(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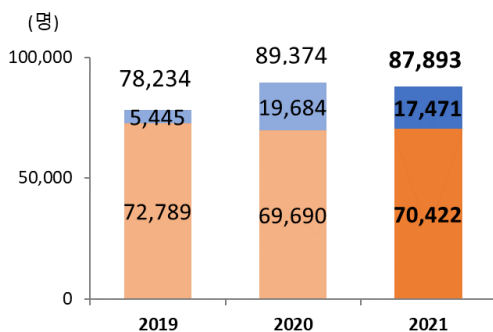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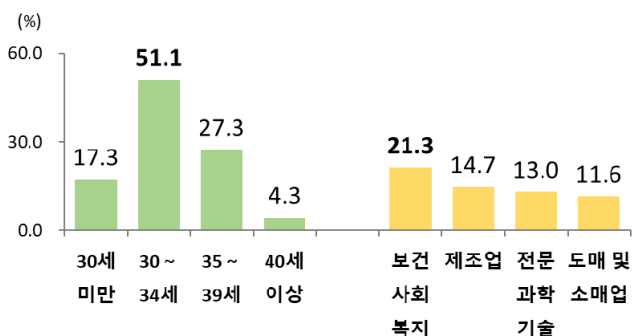
'21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7% 감소, 모(母)는 증가, 부(父)는 감소

- '21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고용보험 출산휴가자는 8만 7,893명으로 전년(8만 9,374명)보다 1.7%(-1,481명) 감소함(23쪽)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7,471명으로 전년(1만 9,684명)보다 11.2%(-2,213명) 감소함(23쪽)
- 출산휴가를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1.1%)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에서 가장 높음(24쪽, 26쪽)

< 전체 출산휴가자 수 >



< 모(母)의 출산휴가자 비중 >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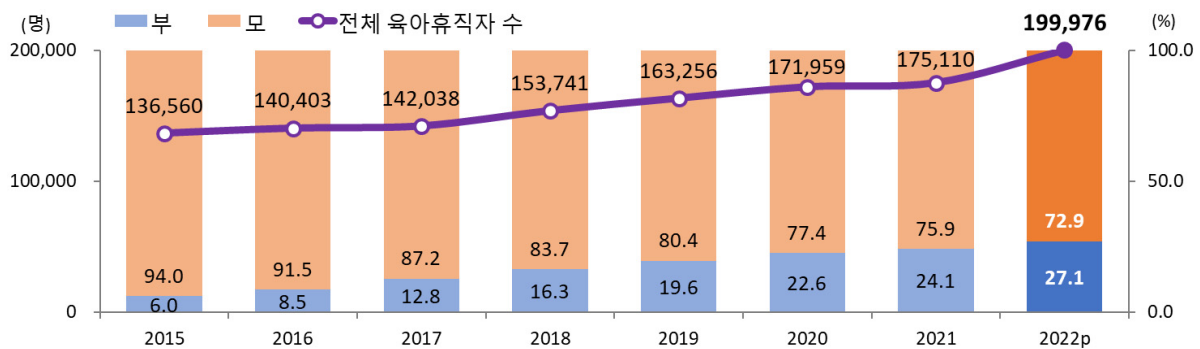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임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24,866명) 증가한 19만 9,976명임

*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2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등 제외

-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5만 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12,043명) 증가하였으며, 모(母)는 14만 5,736명으로 전년보다 9.6%(12,823명) 증가함
- 육아휴직자 19만 9,976명 중 부(父)는 27.1%, 모(母)는 72.9%를 차지함
 - 특히,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24.1%) 대비 3.0%p 상승함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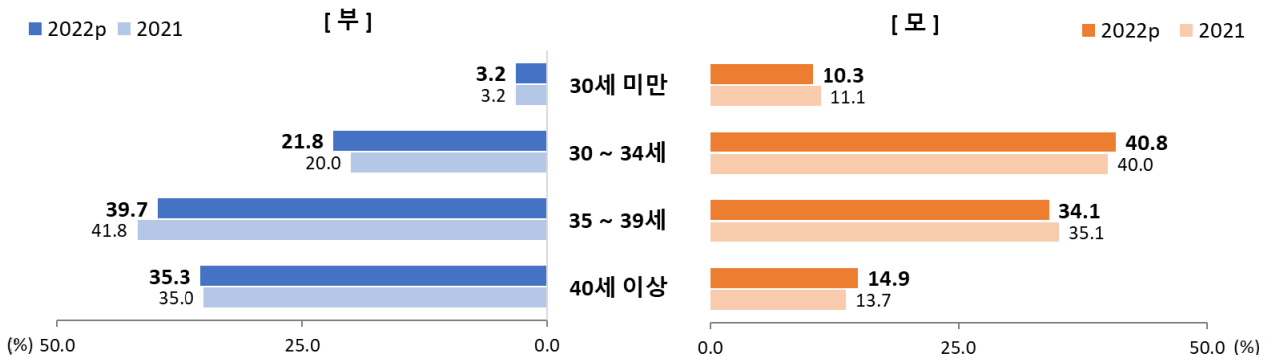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p	증감	증감률
전체	136,560	140,403	142,038	153,741	163,256	171,959	175,110	199,976	24,866	14.2
부	8,220	11,965	18,160	25,062	32,051	38,813	42,197	54,240	12,043	28.5
비중	6.0	8.5	12.8	16.3	19.6	22.6	24.1	27.1	3.0	-
모	128,340	128,438	123,878	128,679	131,205	133,146	132,913	145,736	12,823	9.6
비중	94.0	91.5	87.2	83.7	80.4	77.4	75.9	72.9	-3.0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7%), 모(母)는 30~34세(40.8%)가 가장 많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39.7%)와 40세 이상(35.3%)이 75.0%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30~34세(1.7%p) 및 40세 이상(0.3%p)이 차지한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2.1%p), 30세 미만(-0.0%p)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40.8%)와 35~39세(34.1%)가 74.8%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0.3%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40세 이상(1.2%p) 및 30~34세(0.7%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1.1%p) 및 30세 미만(-0.8%p) 비중은 하락함

<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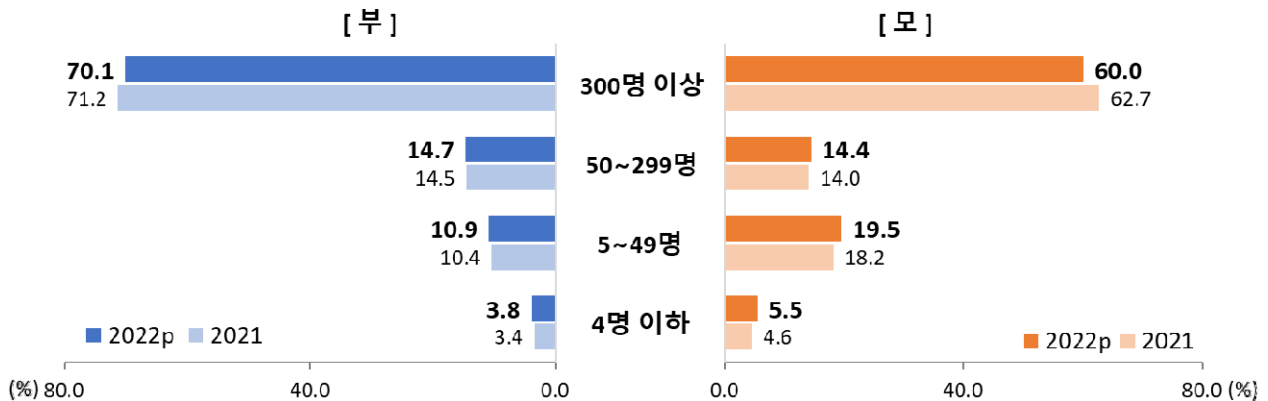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42,197	132,913	54,240	145,736	12,043	12,823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3.2	11.1	3.2	10.3	-0.0	-0.8
	30~34세	20.0	40.0	21.8	40.8	1.7	0.7
	35~39세	41.8	35.1	39.7	34.1	-2.1	-1.1
	40세 이상	35.0	13.7	35.3	14.9	0.3	1.2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와 모(母)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인 기업체 순임
 -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5~49명(0.4%p), 4명 이하(0.4%p), 50~299명(0.3%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1.2%p)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임
 -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5~49명(1.3%p), 4명 이하(1.0%p), 50~299명(0.4%p)인 기업체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2.7%p)인 기업체 비중은 하락함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42,197	132,913	54,240	145,736	12,043	12,823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71.2	62.7	70.1	60.0	-1.2	-2.7
	50~299명	14.5	14.0	14.7	14.4	0.3	0.4
	5~49명	10.4	18.2	10.9	19.5	0.4	1.3
	4명 이하	3.4	4.6	3.8	5.5	0.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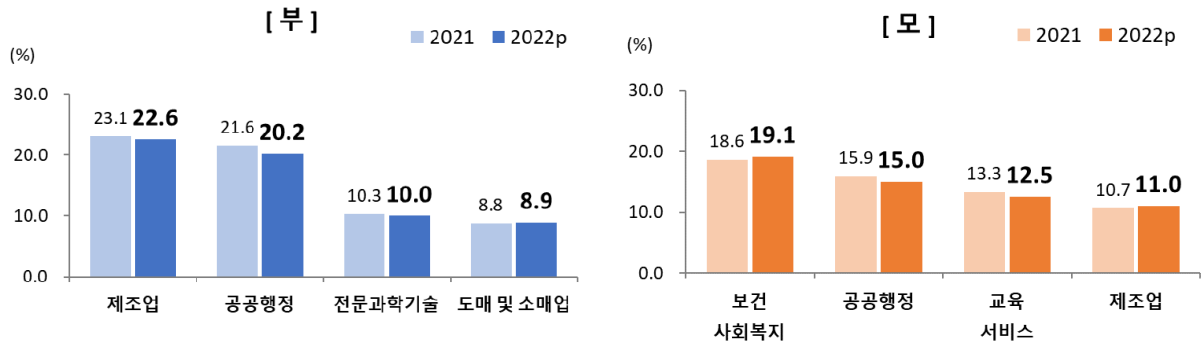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2.6%)에,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22.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0%) 순임
 -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5.0%p), 금융 및 보험업(0.4%p) 등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p), 제조업(-0.5%p) 등의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0%), 교육 서비스업(12.5%) 순임
 - 전년대비 도매 및 소매업(0.4%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4%p) 등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9%p), 교육 서비스업(-0.8%p) 등의 비중은 하락함

<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42,197	132,913	54,240	145,736	12,043	12,823
계		100.0	100.0	100.0	100.0	-	-
비 중	제조업	23.1	10.7	22.6	11.0	-0.5	0.3
	건설업	3.1	1.6	3.1	1.6	0.1	0.0
	도매 및 소매업	8.8	7.8	8.9	8.2	0.2	0.4
	운수 및 창고업	4.2	2.1	4.7	2.2	0.5	0.0
	숙박 및 음식점업	1.7	1.3	1.5	1.3	-0.2	0.1
	정보통신업	4.8	3.8	4.7	3.9	-0.1	0.1
	금융 및 보험업	3.4	7.6	3.8	7.1	0.4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	9.0	10.0	9.1	-0.4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	4.8	5.4	4.7	0.1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6	15.9	20.2	15.0	-1.3	-0.9
	교육 서비스업	5.4	13.3	5.4	12.5	0.0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18.6	3.4	19.1	0.4	0.4
	기타*	5.3	3.6	6.2	4.3	0.8	0.6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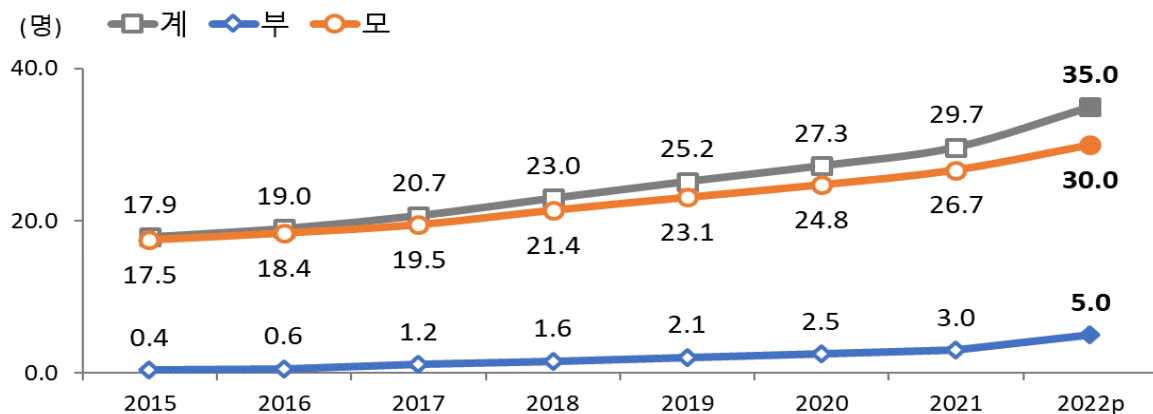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8만 7,092명임

-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9,701명(12.5%) 증가한 8만 7,092명임
 -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1만 2,407명으로 전년보다 4,474명(56.4%) 증가하였고, 모(母)는 7만 4,685명으로 전년보다 5,227명(7.5%) 증가함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
 - 부(父)는 전년대비 1.9명 증가한 5.0명, 모(母)는 전년대비 3.3명 증가한 30.0명임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단위: 명, %, 출생아 100명당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P	증감	증감률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C+D)	전체	75,227	76,136	74,275	77,391	87,092	9,701	12.5
	부(C)	5,278	6,340	6,871	7,933	12,407	4,474	56.4
	모(D)	69,949	69,796	67,404	69,458	74,685	5,227	7.5
	부&모*	2,706	3,644	4,828	5,844	12,888	7,044	120.5
출생아 (B)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11,376	-4.4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B*100)	전체	23.0	25.2	27.3	29.7	35.0	5.2	-
	부	1.6	2.1	2.5	3.0	5.0	1.9	-
	모	21.4	23.1	24.8	26.7	30.0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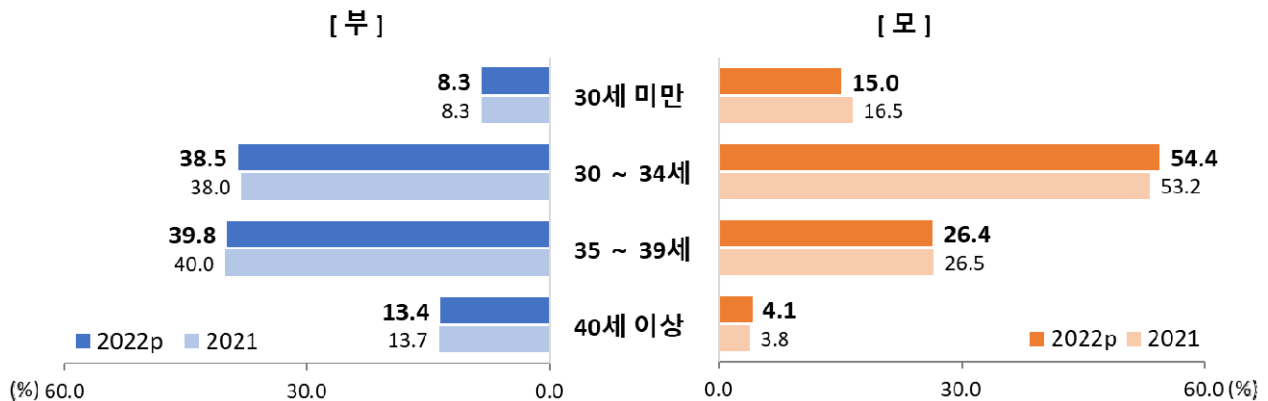
* '부&모'는 출생아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임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8%), 모(母)는 30~34세(54.4%)가 가장 많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는 35~39세(39.8%)와 30~34세(38.5%)가 78.3%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이 8.3%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30~34세(0.6%p), 30세 미만(0.0%p) 비중은 상승한 반면, 40세 이상(-0.3%p), 35~39세(-0.2%p) 비중은 하락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54.4%)와 35~39세(26.4%)가 80.9%를 차지하고, 40세 이상이 4.1%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30~34세(1.3%p), 40세 이상(0.4%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1.5%p), 35~39세(-0.1%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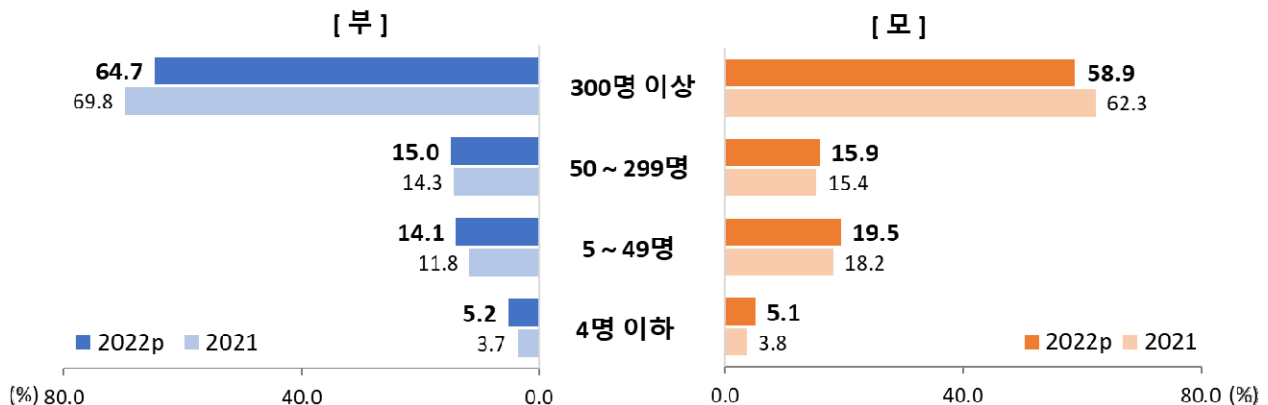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7,933	69,458	12,407	74,685	4,474	5,227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8.3	16.5	8.3	15.0	0.0	-1.5
	30~34세	38.0	53.2	38.5	54.4	0.6	1.3
	35~39세	40.0	26.5	39.8	26.4	-0.2	-0.1
	40세 이상	13.7	3.8	13.4	4.1	-0.3	0.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와 모(母)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64.7%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5.2%로 가장 낮음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대비 5.2%p 하락한 반면, 5~49명(2.3%p), 4명 이하(1.5%p), 50~299명(0.7%p)은 상승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58.9%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5.1%로 가장 낮음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대비 3.5%p 하락한 반면, 5~49명(1.4%p), 4명 이하(1.3%p), 50~299명(0.5%p)은 상승함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7,933	69,458	12,407	74,685	4,474	5,227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69.8	62.3	64.7	58.9	-5.2	-3.5
	50~299명	14.3	15.4	15.0	15.9	0.7	0.5
	5~49명	11.8	18.2	14.1	19.5	2.3	1.4
	4명 이하	3.7	3.8	5.2	5.1	1.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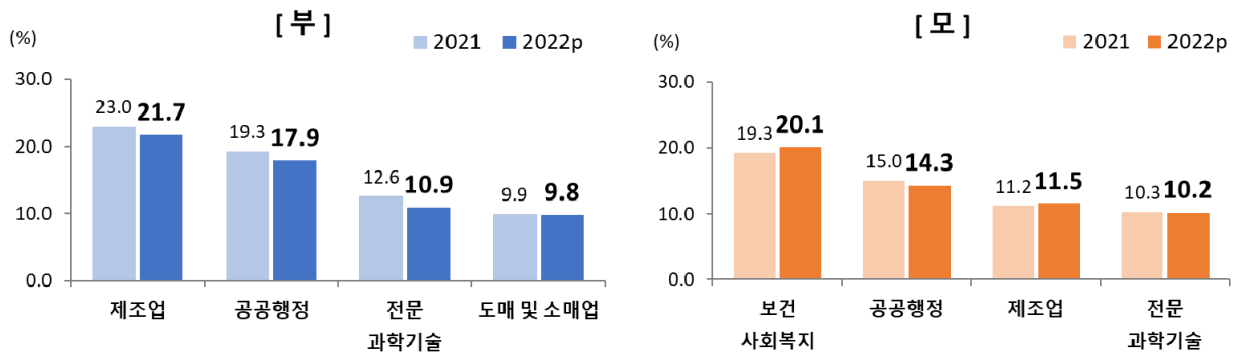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1.7%),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7%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7.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9%) 순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3%), 제조업(11.5%) 순임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7,933	69,458	12,407	74,685	4,474	5,227
계		100.0	100.0	100.0	100.0	-	-
비 중	제조업	23.0	11.2	21.7	11.5	-1.2	0.2
	건설업	3.6	1.5	3.8	1.6	0.2	0.1
	도매 및 소매업	9.9	8.3	9.8	8.6	0.0	0.3
	운수 및 창고업	4.3	2.5	5.1	2.4	0.7	0.0
	숙박 및 음식점업	2.3	1.2	1.9	1.3	-0.4	0.0
	정보통신업	4.6	4.2	5.1	4.4	0.5	0.2
	금융 및 보험업	2.7	7.7	3.2	6.9	0.5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6	10.3	10.9	10.2	-1.7	-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	4.3	5.6	4.4	0.2	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3	15.0	17.9	14.3	-1.5	-0.7
	교육 서비스업	3.8	10.7	3.8	9.8	-0.1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19.3	3.4	20.1	0.5	0.8
	기타*	5.6	3.7	7.7	4.5	2.1	0.7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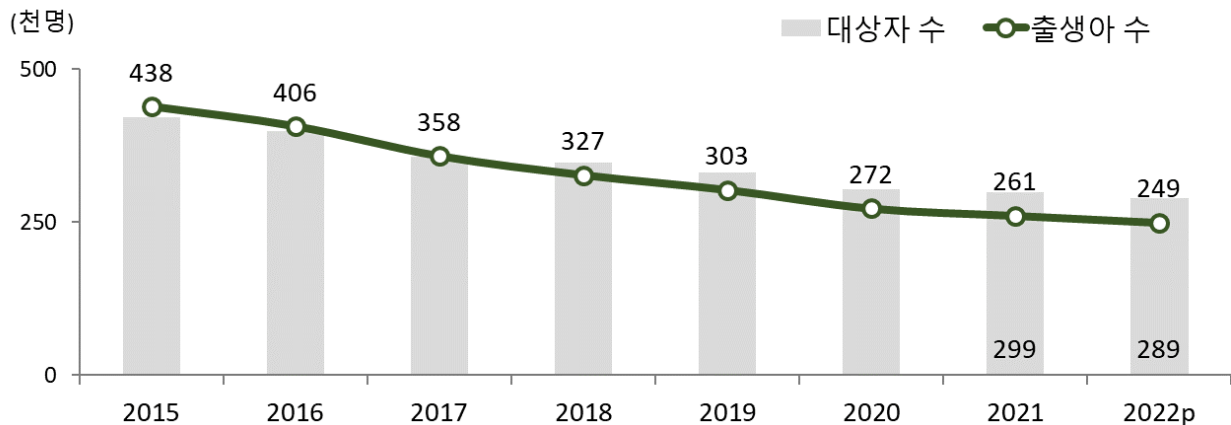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28만 8,509명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8만 8,509명으로 전년대비 1만 958명(-3.7%) 감소함
 - 육아휴직 대상자 중 출생아 부(父)가 63.0%를 차지하고 출생아 모(母)는 37.0%를 차지함
 - 전년대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父)는 1만 1,487명(-5.9%) 감소한 반면, 모(母)는 529명(0.5%) 증가함
- '22년 출생아는 24만 9,186명으로 전년대비 1만 1,376명(-4.4%) 감소함
 - 전년대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육아휴직 대상자 감소 폭 보다 크게 나타남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 >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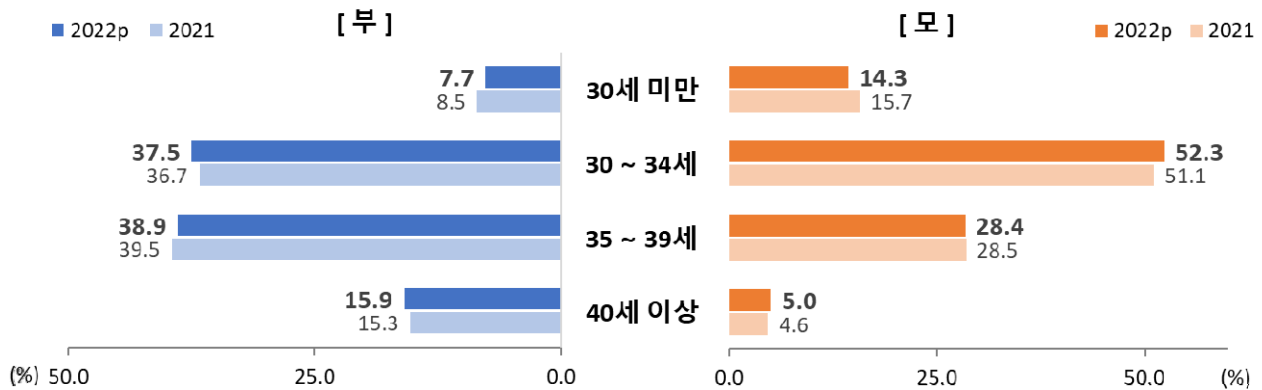
		2021	비중	2022 ^p	비중	증감	증감률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계	299,467	100.0	288,509	100.0	-10,958	-3.7
	부	193,355	64.6	181,868	63.0	-11,487	-5.9
	모	106,112	35.4	106,641	37.0	529	0.5
출생아 수		260,562	-	249,186	-	-11,376	-4.4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8.9%), 모(母)는 30~34세(52.3%)가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38.9%)와 30~34세(37.5%)가 76.4%를 차지함
 - 전년대비 30~34세(0.7%p)와 40세 이상(0.5%p)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0.7%p), 35~39세(-0.5%p) 비중은 하락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52.3%)와 35~39세(28.4%)가 80.7%를 차지함
 - 전년대비 30~34세(1.2%p), 40세 이상(0.4%p)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1.5%p), 35~39세(-0.2%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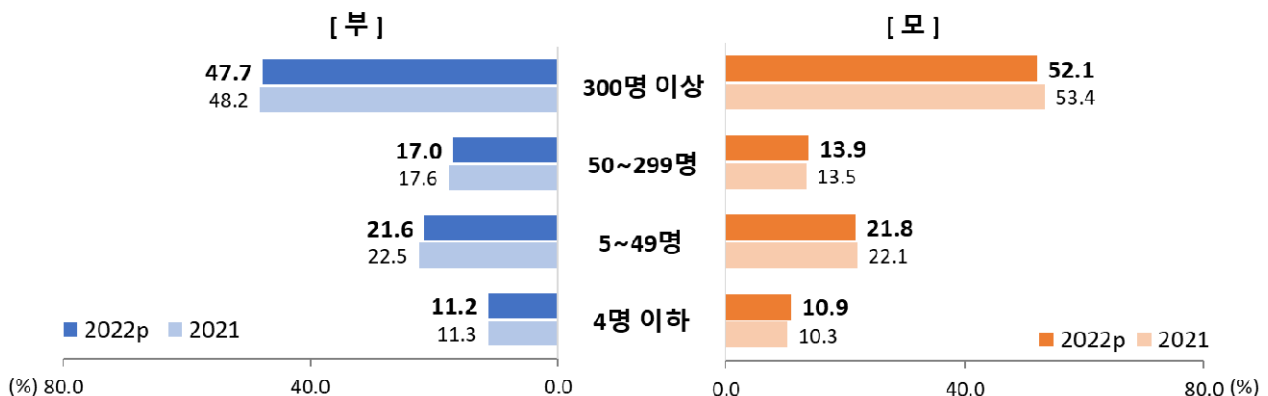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 대상자 수		193,355	106,112	181,868	106,641	-11,487	529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8.5	15.7	7.7	14.3	-0.7	-1.5
	30~34세	36.7	51.1	37.5	52.3	0.7	1.2
	35~39세	39.5	28.5	38.9	28.4	-0.5	-0.2
	40세 이상	15.3	4.6	15.9	5.0	0.5	0.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와 모(母)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47.7%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5~49명(-0.9%p), 50~299명(-0.7%p), 300명 이상(-0.5%p), 4명 이하(-0.1%p) 비중은 모두 하락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52.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4명 이하(0.6%p), 50~299명(0.4%p) 규모에 소속된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1.3%p), 5~49명(-0.3%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 대상자 수		193,355	106,112	181,868	106,641	-11,487	529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48.2	53.4	47.7	52.1	-0.5	-1.3
	50~299명	17.6	13.5	17.0	13.9	-0.7	0.4
	5~49명	22.5	22.1	21.6	21.8	-0.9	-0.3
	4명 이하	11.3	10.3	11.2	10.9	-0.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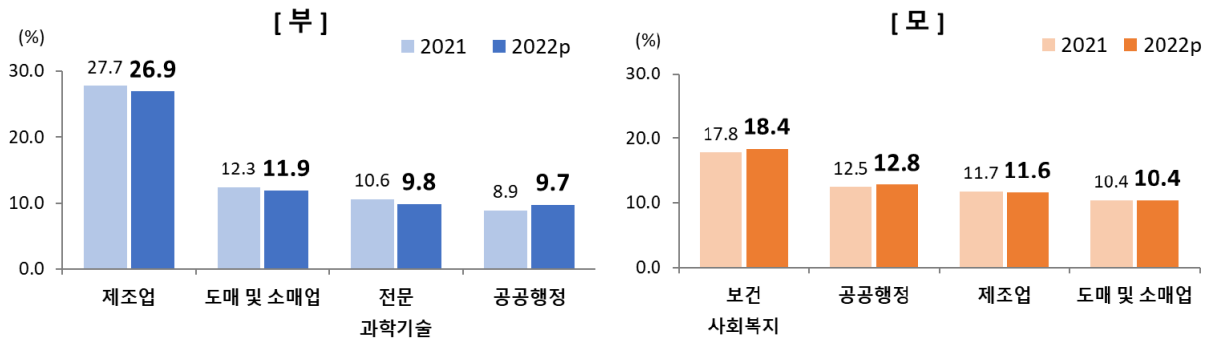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6.9%),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8.4%)에 가장 많이 종사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6.9%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11.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8%) 순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8.4%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8%), 제조업(11.6%) 순임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 대상자 수		193,355	106,112	181,868	106,641	-11,487	529
계		100.0	100.0	100.0	100.0	-	-
비 중	제조업	27.7	11.7	26.9	11.6	-0.9	-0.1
	건설업	6.9	2.6	5.9	2.5	-1.0	-0.1
	도매 및 소매업	12.3	10.4	11.9	10.4	-0.4	0.0
	운수 및 창고업	3.6	2.3	3.6	2.3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2.6	2.7	2.4	2.5	-0.2	-0.2
	정보통신업	5.5	4.0	5.7	4.2	0.2	0.2
	금융 및 보험업	4.5	6.8	4.3	6.3	-0.2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6	10.0	9.8	9.7	-0.8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7	3.9	3.7	3.9	0.0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	12.5	9.7	12.8	0.8	0.3
	교육 서비스업	3.7	10.9	3.5	9.9	-0.2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17.8	4.1	18.4	0.1	0.7
	기타*	5.9	4.4	8.6	5.6	2.7	1.1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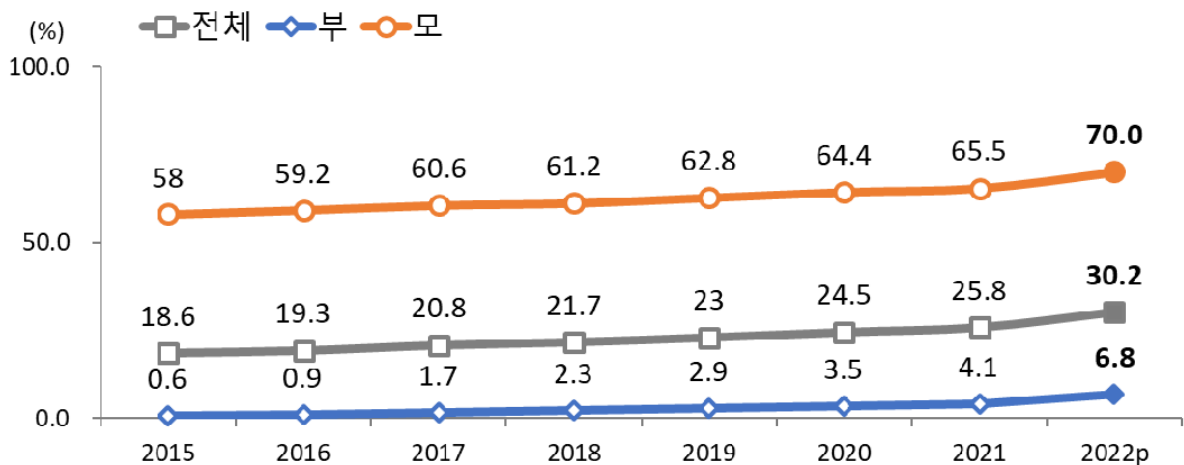
가. 육아휴직 사용률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대비 4.3%p 상승한 30.2%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전년대비 4.3%p 증가한 30.2%임

○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가 6.8%, 모(母)가 70.0%로 전년대비 부(父)는 2.7%p, 모(母)는 4.6%p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p	증감	증감률
육아휴직 사용률 (A/B*100)	전체	21.7	23.0	24.5	25.8	30.2	4.3	-
	부	2.3	2.9	3.5	4.1	6.8	2.7	-
	모	61.2	62.8	64.4	65.5	70.0	4.6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	전체	75,227	76,136	74,275	77,391	87,092	9,701	12.5
	부	5,278	6,340	6,871	7,933	12,407	4,474	56.4
	모	69,949	69,796	67,404	69,458	74,685	5,227	7.5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B)	전체	346,914	331,409	303,693	299,467	288,509	-10,958	-3.7
	부	232,690	220,350	198,971	193,355	181,868	-11,487	-5.9
	모	114,224	111,059	104,722	106,112	106,641	529	0.5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모 모두 30세 미만이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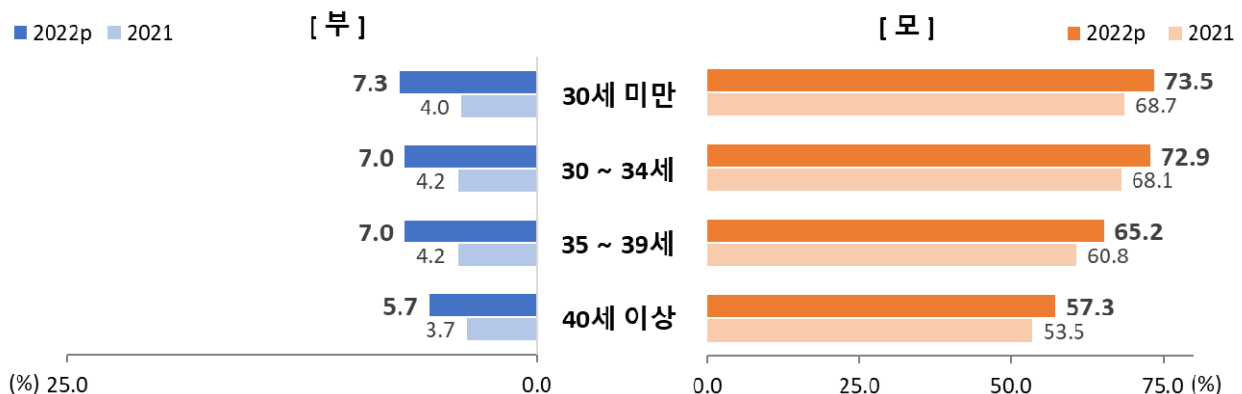
□ '22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7.3%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5.7%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30세 미만(3.3%p), 35~39세(2.8%p), 30~34세(2.8%p), 40세 이상(2.1%p)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22년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73.5%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57.3%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30~34세(4.8%p), 30세 미만(4.7%p), 35~39세(4.4%p), 40세 이상(3.8%p)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출생아 부모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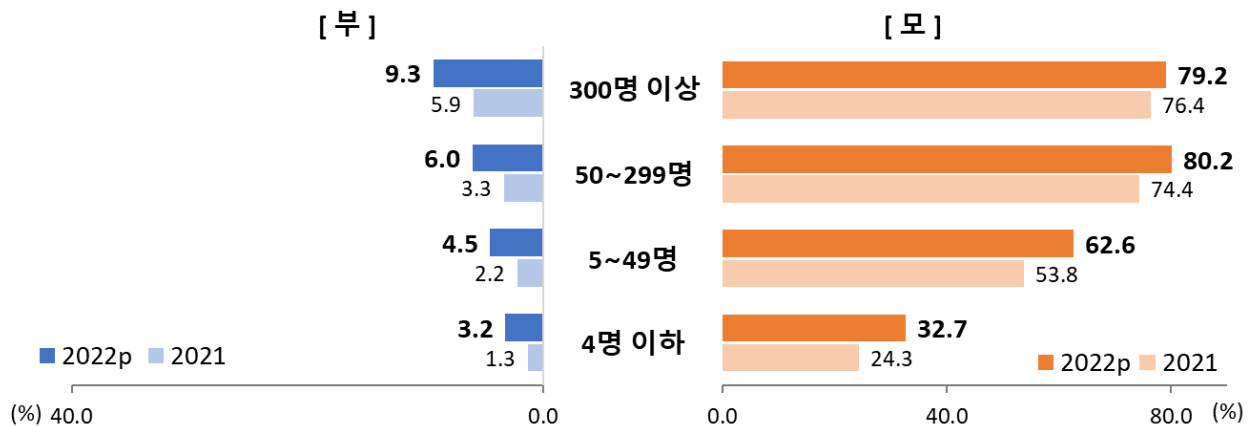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4.1	65.5	6.8	70.0	2.7	4.6
30세 미만	4.0	68.7	7.3	73.5	3.3	4.7
30~34세	4.2	68.1	7.0	72.9	2.8	4.8
35~39세	4.2	60.8	7.0	65.2	2.8	4.4
40세 이상	3.7	53.5	5.7	57.3	2.1	3.8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부는 300명 이상, 모는 50~299명인 기업체 규모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음

- '22년 출생아 부(父)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가 9.3%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체는 3.2%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3.3%p), 50~299명(2.7%p), 5~49명(2.3%p), 4명 이하(1.8%p)로 모든 규모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22년 출생아 모(母)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50~299명 이상인 기업체가 80.2%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체는 32.7%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기업체 규모 5~49명(8.8%p), 4명 이하(8.4%p), 50~299명(5.8%p), 300명 이상(2.8%p)으로 모든 규모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기업체 규모별 사용률 >

(단위: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4.1	65.5	6.8	70.0	2.7	4.6
300명 이상	5.9	76.4	9.3	79.2	3.3	2.8
50~299명	3.3	74.4	6.0	80.2	2.7	5.8
5~49명	2.2	53.8	4.5	62.6	2.3	8.8
4명 이하	1.3	24.3	3.2	32.7	1.8	8.4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부(父)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6%), 모(母)는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8.7%)에서 가장 많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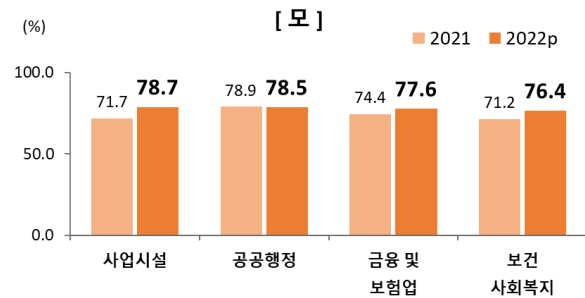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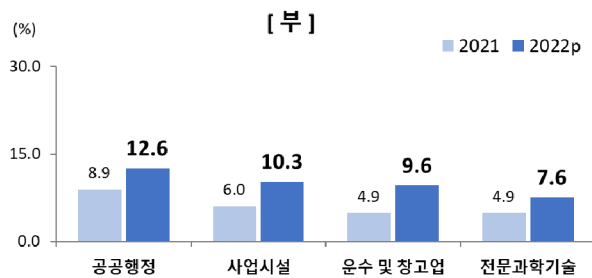
□ '22년 출생아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2.6%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0.3%), 운수 및 창고업(9.6%) 순임

○ 전년대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승함

□ '22년 출생아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78.7%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8.5%), 금융 및 보험업(77.6%) 순임

○ 전년대비 모(母)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5%p)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1		2022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4.1	65.5	6.8	70.0	2.7	4.6
제조업	3.4	62.8	5.5	69.3	2.1	6.5
건설업	2.1	37.4	4.4	44.8	2.3	7.4
도매 및 소매업	3.3	52.2	5.6	58.2	2.3	6.0
운수 및 창고업	4.9	70.7	9.6	74.9	4.7	4.2
숙박 및 음식점업	3.7	29.8	5.4	34.5	1.7	4.6
정보통신업	3.4	69.1	6.2	74.0	2.8	4.9
금융 및 보험업	2.5	74.4	5.2	77.6	2.7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	67.6	7.6	73.8	2.7	6.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0	71.7	10.3	78.7	4.3	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	78.9	12.6	78.5	3.7	-0.5
교육 서비스업	4.2	63.9	7.3	69.1	3.1	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	71.2	5.8	76.4	2.7	5.2
기타*	3.8	55.1	6.1	56.2	2.3	1.1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3. 전 기간(2013~2022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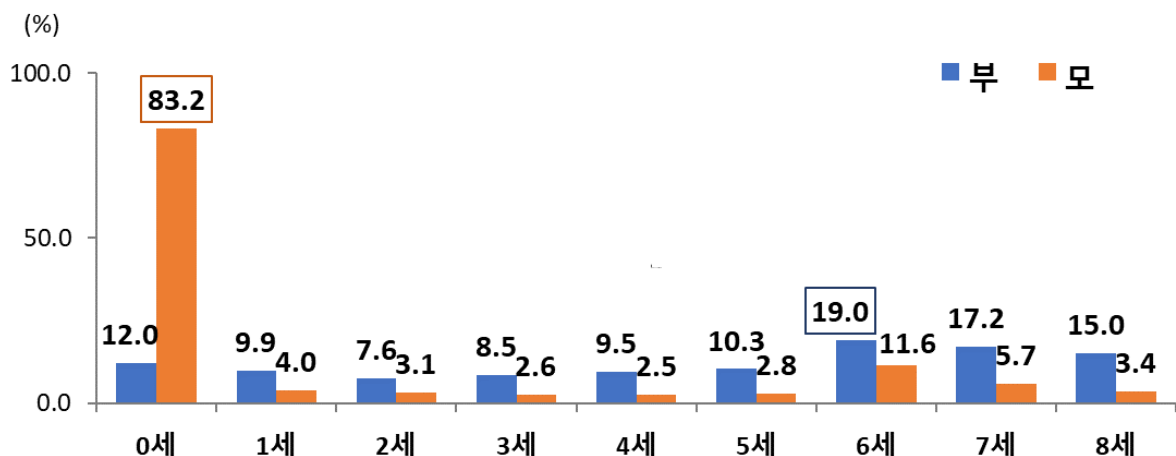
‘13년에 출산하여 ‘22년까지 한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모(母)는 자녀 나이 0세(83.2%) 때, 부(父)는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년 출생아의 한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비중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 때, 모(母)는 0세 때 가장 많이 사용함

*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 부(父)는 자녀가 6세(19.0%), 7세(17.2%), 8세(15.0%) 때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높음
- 모(母)는 자녀가 0세(83.2%), 6세(11.6%), 7세(5.7%) 때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높음

< (한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



< (한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

(단위: %, %p)

출생연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2	전체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2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2013 ^p	전체	72.8	4.8	3.8	3.4	3.5	3.9	12.7	7.4	5.0
	부	12.0	9.9	7.6	8.5	9.5	10.3	19.0	17.2	15.0
	모	83.2	4.0	3.1	2.6	2.5	2.8	11.6	5.7	3.4
증감	전체	-0.7	-0.3	-0.2	-0.4	0.2	0.3	1.2	-0.3	0.5
	부	-0.3	0.6	0.1	0.2	0.3	-0.5	1.9	-2.9	0.8
	모	1.3	-0.5	-0.4	-0.6	0.0	0.2	0.8	-0.3	0.2

*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경우 각 휴직 당시 자녀의 연령으로 중복 집계하여 전체 합이 100.0 이상임에 유의

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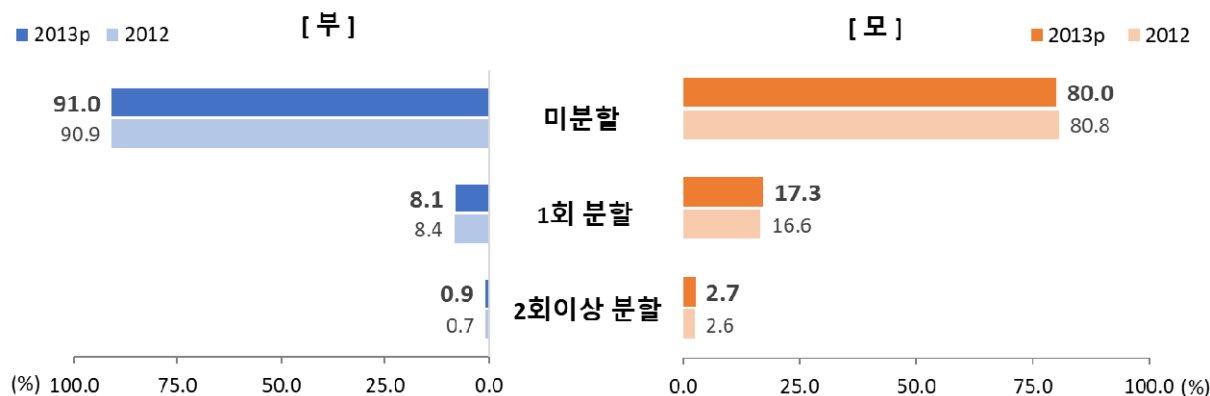
육아휴직을 1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한 부(父)는 9.0%, 모(母)는 20.0%임

- '13년 출생아의 한자녀 부모*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父)는 미분할 사용(1회 휴직)이 91.0%, 1회 분할 사용(2회 휴직)이 8.1%, 2회 이상 분할 사용(3회 이상 휴직)이 0.9%임

*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 모(母)는 미분할 사용(1회 휴직)이 80.0%, 1회 분할 사용(2회 휴직)이 17.3%, 2회 이상 분할 사용(3회 이상 휴직)이 2.7%임

< 한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전 기간) >



< 한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전 기간) >

(단위: %, %p)

구분	2012~2021			2013~2022 ^p			증감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미분할(1회 휴직)	82.0	90.9	80.8	81.6	91.0	80.0	-0.4	0.1	-0.8
1회 분할(2회 휴직)	15.6	8.4	16.6	16.0	8.1	17.3	0.4	-0.3	0.7
2회 이상 분할(3회이상 휴직)	2.4	0.7	2.6	2.4	0.9	2.7	0.0	0.2	0.1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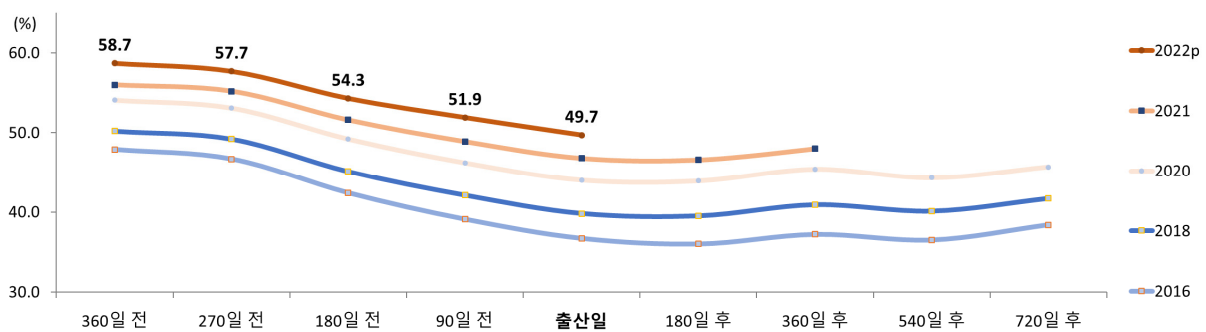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고, 직업을 보유한 비중은 출산 360일 전(58.7%)보다 9.0%p 낮음

□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58.7%)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0%p 낮아짐

○ 전년대비 출산 모(母)의 출산일 기준 직업 보유 비중은 2.9%p 상승함

□ 출산 모(母)의 출산 전·후 취업 비중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 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다시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임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단위: %, %p)

		2018	2019	2020	2021	2022 ^p	증감
출산 전	360일 전	50.2	51.8	54.1	56.0	58.7	2.7
	270일 전	49.2	50.9	53.1	55.2	57.7	2.5
	180일 전	45.1	46.9	49.2	51.6	54.3	2.7
	90일 전	42.1	44.0	46.2	48.9	51.9	3.0
출산일		39.8	41.8	44.0	46.8	49.7	2.9
출산 후	180일 후	39.5	41.4	43.9	46.6	-	-
	360일 후	40.9	42.5	45.4	48.0	-	-
	540일 후	40.1	41.6	44.3	-	-	-
	720일 후	41.7	43.7	45.7	-	-	-

5. 2021년 출산휴가자

가. 2021년 출산휴가자 수

'21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7% 감소, 부(父)는 감소한 반면, 모(母)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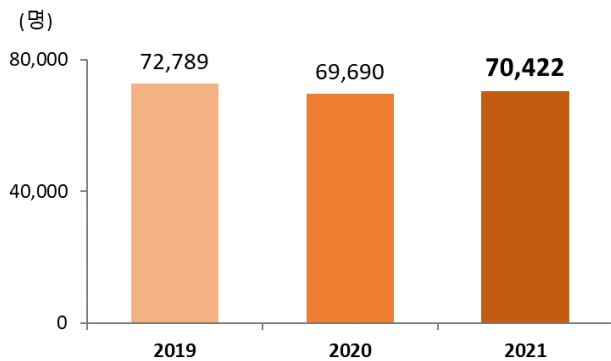
□ '21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고용보험 출산휴가자는 8만 7,893명으로 전년(8만 9,374명)보다 1,481명(-1.7%) 감소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7,471명으로 전년(1만 9,684명)보다 2,213명(-11.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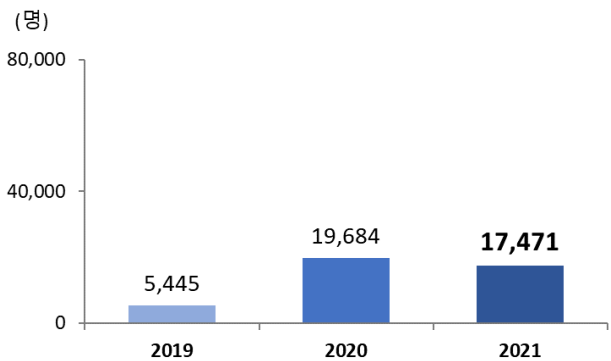
*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부(父), 64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참조

○ 출산휴가자 중 모(母)는 7만 422명으로 전년(6만 9,690명)보다 732명(1.1%) 증가함

< 2019~2021년 모(母) 출산휴가자 수 >



< 2019~2021년 부(父) 배우자 출산휴가자 수 >



< 2021년 출산휴가자 수 >

(단위: 명, %)

	2019	2020	2021	증감	증감률
계	78,234	89,374	87,893	-1,481	-1.7
모(母) 출산휴가	72,789	69,690	70,422	732	1.1
부(父) 배우자 출산휴가	5,445	19,684	17,471	-2,213	-11.2

※ 출산휴가자는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父)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 아닌 배우자는 집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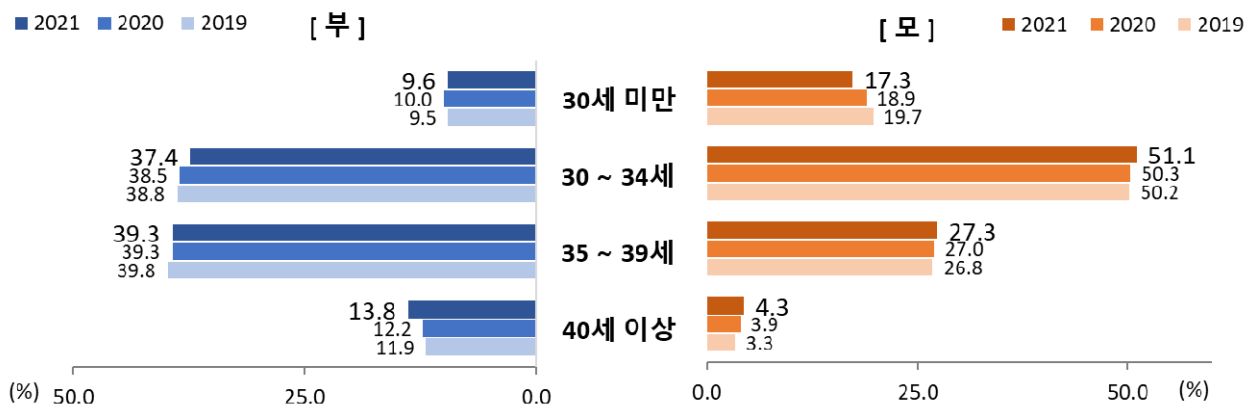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해당기업, 64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참조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3%), 모(母)는 30~34세(51.1%)가 가장 많음

- '21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는 35~39세가 39.3%로 가장 높고, 30~34세(37.4%), 40세 이상(13.8%) 순임
 - 전년대비 40세 이상(1.6%p)과 35~39세(0.0%p)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34세(-1.2%p) 및 30세 미만(-0.4%p) 비중은 하락함
- 출산휴가자 중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가 51.1%로 가장 높고, 35~39세(27.3%), 30세 미만(17.3%) 순임
 - 전년대비 30~34세(0.8%p), 40세 이상(0.4%p), 35~39세(0.3%p)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1.5%p) 비중은 하락함

< 연령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연령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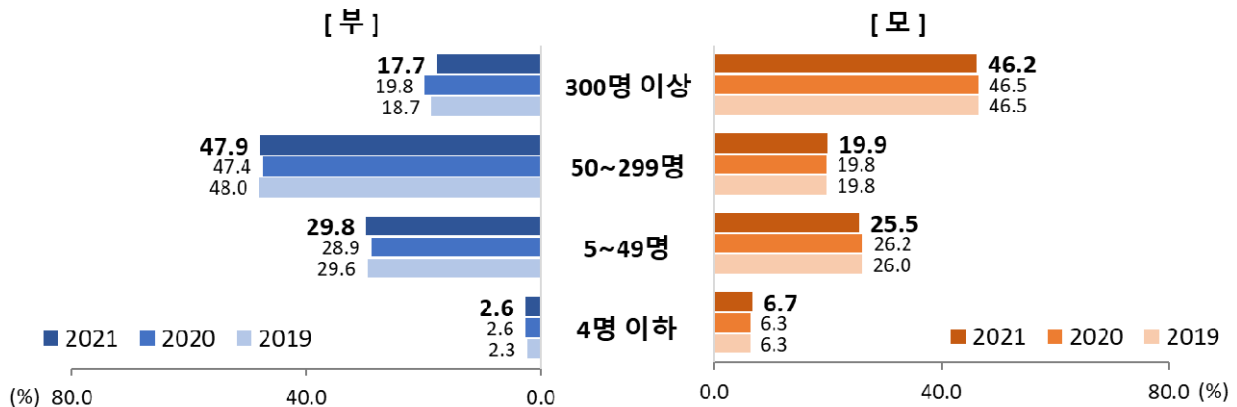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수		5,445	72,789	19,684	69,690	17,471	70,422	-2,213	732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9.5	19.7	10.0	18.9	9.6	17.3	-0.4	-1.5
	30~34세	38.8	50.2	38.5	50.3	37.4	51.1	-1.2	0.8
	35~39세	39.8	26.8	39.3	27.0	39.3	27.3	0.0	0.3
	40세 이상	11.9	3.3	12.2	3.9	13.8	4.3	1.6	0.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는 50~299명(47.9%)인 기업체에, 모(母)는 300명 이상(46.2%)인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 고용보험 출산휴가자 중 부(父)는 종사자 규모 50~299명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고, 5~49명(29.8%), 300명 이상(17.7%) 순임
 - * 고용보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 출산휴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 전년대비 5~49명(0.9%p), 50~299명(0.5%p), 4명 이하(0.0%p) 기업체 소속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2.2%p) 기업체 소속 비중은 하락함
- '21년 고용보험 출산휴가를 한 모(母)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46.2%로 가장 높았고, 5~49명(25.5%), 50~299명(19.9%) 순임
 - 전년대비 4명 이하(0.4%p), 50~299명(0.2%p) 기업체 소속 비중은 상승한 반면, 5~49명(-0.6%p), 300명 이상(-0.3%p)인 기업체 소속 비중은 하락함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비중 >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2019		2020		2021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수		5,445	72,789	19,684	69,690	17,471	70,422	-2,213	732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18.7	46.5	19.8	46.5	17.7	46.2	-2.2	-0.3
	50~299명	48.0	19.8	47.4	19.8	47.9	19.9	0.5	0.2
	5~49명	29.6	26.0	28.9	26.2	29.8	25.5	0.9	-0.6
	4명 이하	2.3	6.3	2.6	6.3	2.6	6.7	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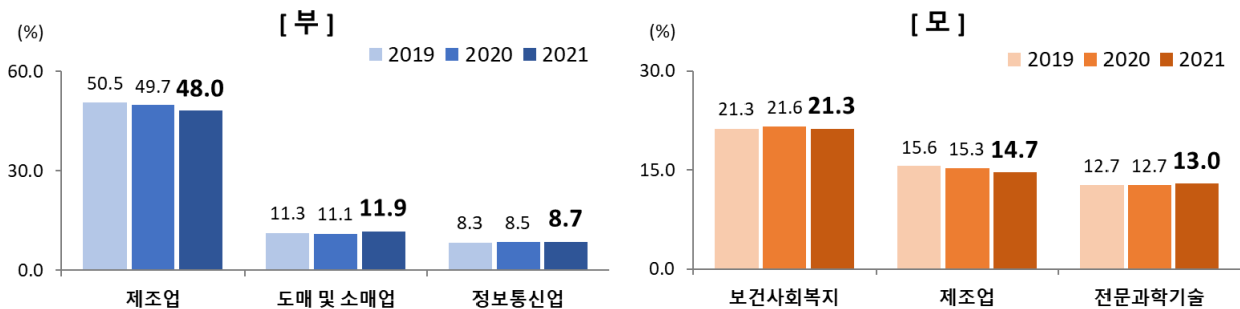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48.0%),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에 가장 많이 종사함

- '21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48.0%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11.9%), 정보통신업(8.7%) 순임
-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제조업(14.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0%) 순임

< 산업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산업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2019		2020		2021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수		5,445	72,789	19,684	69,690	17,471	70,422	-2,213	732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50.5	15.6	49.7	15.3	48.0	14.7	-1.7	-0.7
	건설업	3.1	2.4	3.3	2.2	3.3	2.2	-0.1	0.0
	도매 및 소매업	11.3	11.2	11.1	11.7	11.9	11.6	0.8	-0.1
	운수 및 창고업	2.9	3.1	3.2	2.9	3.3	3.1	0.1	0.1
	숙박 및 음식점업	1.1	1.4	1.1	1.5	1.0	1.6	-0.2	0.1
	정보통신업	8.3	5.3	8.5	5.5	8.7	5.8	0.3	0.3
	금융 및 보험업	1.8	9.5	2.2	9.0	2.2	9.1	0.1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	12.7	8.5	12.7	8.2	13.0	-0.3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9	6.3	4.7	6.1	4.5	5.6	-0.1	-0.5
	교육 서비스업	0.6	4.2	0.6	4.3	0.5	4.1	0.0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21.3	3.2	21.6	3.2	21.3	0.0	-0.3
	그 외 기타*	4.3	6.9	4.0	7.0	5.1	8.0	1.1	1.0

* 기타(농림어업, 공공행정,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통 계 표

1. 전체 육아휴직자

1-1. 전체 육아휴직자 수	30
1-2. 연령별 전체 육아휴직자	31
1-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32
1-4. 종사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33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2-1-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34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5
2-1-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6
2-1-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7
2-1-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8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2-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39
2-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0
2-2-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1
2-2-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2
2-2-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3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2-3-1. 육아휴직 사용률	44
2-3-2.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45
2-3-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46
2-3-4.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47

3. 전 기간($t \sim t+9$ 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48
- 3-2.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 48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49

5. 2021년 출산휴가자

- 5-1. 2021년 출산휴가자 수 51
- 5-2. 연령별 출산휴가자 51
- 5-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52
- 5-4. 종사 산업별 출산휴가자 52

1. 전체 육아휴직자

1-1. 전체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1	93,895	3,053	90,842
2012	104,996	3,691	101,305
2013	111,083	4,498	106,585
2014	124,317	6,219	118,098
2015	136,560	8,220	128,340
2016	140,403	11,965	128,438
2017	142,038	18,160	123,878
2018	153,741	25,062	128,679
2019	163,256	32,051	131,205
2020	171,959	38,813	133,146
2021	175,110	42,197	132,913
2022 ^p	199,976	54,240	145,736

1-2. 연령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계	93,895	25,744	50,497	15,398	2,256
부	3,053	176	1,047	1,285	545
모	90,842	25,568	49,450	14,113	1,711
< 2012 >					
계	104,996	24,917	57,498	19,498	3,083
부	3,691	171	1,226	1,556	738
모	101,305	24,746	56,272	17,942	2,345
< 2013 >					
계	111,083	22,208	61,520	23,354	4,001
부	4,498	199	1,423	1,908	968
모	106,585	22,009	60,097	21,446	3,033
< 2014 >					
계	124,317	21,638	65,204	30,930	6,545
부	6,219	186	1,828	2,620	1,585
모	118,098	21,452	63,376	28,310	4,960
< 2015 >					
계	136,560	22,423	67,384	38,050	8,703
부	8,220	278	2,215	3,489	2,238
모	128,340	22,145	65,169	34,561	6,465
< 2016 >					
계	140,403	21,259	65,286	43,165	10,693
부	11,965	372	3,246	5,223	3,124
모	128,438	20,887	62,040	37,942	7,569
< 2017 >					
계	142,038	19,674	60,318	48,520	13,526
부	18,160	611	4,633	8,084	4,832
모	123,878	19,063	55,685	40,436	8,694
< 2018 >					
계	153,741	18,927	59,878	56,626	18,310
부	25,062	836	5,956	11,310	6,960
모	128,679	18,091	53,922	45,316	11,350
< 2019 >					
계	163,256	17,880	60,204	61,771	23,401
부	32,051	1,140	6,837	14,453	9,621
모	131,205	16,740	53,367	47,318	13,780
< 2020 >					
계	171,959	16,904	60,898	64,601	29,556
부	38,813	1,323	7,966	16,831	12,693
모	133,146	15,581	52,932	47,770	16,863
< 2021 >					
계	175,110	16,156	61,659	64,301	32,994
부	42,197	1,356	8,456	17,620	14,765
모	132,913	14,800	53,203	46,681	18,229
< 2022 ^P >					
계	199,976	16,740	71,200	71,178	40,858
부	54,240	1,737	11,802	21,533	19,168
모	145,736	15,003	59,398	49,645	21,690

1-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계	93,895	61,639	9,710	16,596	4,825	1,125
부	3,053	2,134	297	454	147	21
모	90,842	59,505	9,413	16,142	4,678	1,104
< 2012 >						
계	104,996	70,625	11,536	16,794	4,435	1,606
부	3,691	2,657	372	454	169	39
모	101,305	67,968	11,164	16,340	4,266	1,567
< 2013 >						
계	111,083	75,710	12,553	17,085	4,345	1,390
부	4,498	3,297	450	516	185	50
모	106,585	72,413	12,103	16,569	4,160	1,340
< 2014 >						
계	124,317	84,778	14,811	19,017	4,651	1,060
부	6,219	4,507	676	738	237	61
모	118,098	80,271	14,135	18,279	4,414	999
< 2015 >						
계	136,560	92,521	17,015	20,809	5,325	890
부	8,220	5,970	1,033	894	276	47
모	128,340	86,551	15,982	19,915	5,049	843
< 2016 >						
계	140,403	95,792	17,572	20,905	5,060	1,074
부	11,965	8,698	1,473	1,209	445	140
모	128,438	87,094	16,099	19,696	4,615	934
< 2017 >						
계	142,038	96,235	18,548	21,113	5,322	820
부	18,160	13,378	2,277	1,768	618	119
모	123,878	82,857	16,271	19,345	4,704	701
< 2018 >						
계	153,741	102,326	20,652	23,639	5,993	1,131
부	25,062	18,055	3,358	2,529	879	241
모	128,679	84,271	17,294	21,110	5,114	890
< 2019 >						
계	163,256	106,303	22,615	26,442	6,906	990
부	32,051	22,593	4,560	3,541	1,184	173
모	131,205	83,710	18,055	22,901	5,722	817
< 2020 >						
계	171,959	109,641	24,475	29,076	7,945	822
부	38,813	26,682	5,845	4,651	1,493	142
모	133,146	82,959	18,630	24,425	6,452	680
< 2021 >						
계	175,110	113,451	24,727	28,611	7,493	828
부	42,197	30,064	6,105	4,404	1,425	199
모	132,913	83,387	18,622	24,207	6,068	629
< 2022 ^P >						
계	199,976	125,484	28,957	34,358	10,120	1,057
부	54,240	38,018	7,988	5,888	2,058	288
모	145,736	87,466	20,969	28,470	8,062	769

1-4. 종사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1 >														
계	93,895	8,391	2,181	5,652	2,199	902	4,192	8,876	9,233	5,068	14,048	15,594	13,604	3,955
부	3,053	334	97	163	120	30	266	73	342	97	1,047	240	57	187
모	90,842	8,057	2,084	5,489	2,079	872	3,926	8,803	8,891	4,971	13,001	15,354	13,547	3,768
< 2012 >														
계	104,996	12,636	2,051	6,180	2,479	943	4,625	10,281	7,567	5,878	15,920	16,965	15,008	4,463
부	3,691	467	104	159	136	51	280	103	376	101	1,264	326	65	259
모	101,305	12,169	1,947	6,021	2,343	892	4,345	10,178	7,191	5,777	14,656	16,639	14,943	4,204
< 2013 >														
계	111,083	11,065	1,939	6,499	2,590	1,091	4,883	10,839	10,702	5,886	16,907	18,049	16,058	4,575
부	4,498	504	131	230	186	40	336	134	589	172	1,425	361	85	305
모	106,585	10,561	1,808	6,269	2,404	1,051	4,547	10,705	10,113	5,714	15,482	17,688	15,973	4,270
< 2014 >														
계	124,317	12,252	1,959	7,625	3,104	1,336	5,598	11,927	12,347	7,196	18,486	19,014	18,877	4,596
부	6,219	814	184	357	272	84	426	209	821	226	1,825	451	146	404
모	118,098	11,438	1,775	7,268	2,832	1,252	5,172	11,718	11,526	6,970	16,661	18,563	18,731	4,192
< 2015 >														
계	136,560	16,568	2,372	9,442	3,227	1,098	6,480	13,203	11,057	7,678	19,832	20,256	20,623	4,724
부	8,220	1,401	249	522	299	88	702	297	852	317	2,173	610	221	489
모	128,340	15,167	2,123	8,920	2,928	1,010	5,778	12,906	10,205	7,361	17,659	19,646	20,402	4,235
< 2016 >														
계	140,403	17,405	2,866	9,887	3,163	1,213	6,233	13,287	11,254	8,049	20,614	20,682	20,888	4,862
부	11,965	2,336	948	811	348	124	850	404	1,177	494	2,717	728	310	718
모	128,438	15,069	1,918	9,076	2,815	1,089	5,383	12,883	10,077	7,555	17,897	19,954	20,578	4,144
< 2017 >														
계	142,038	18,632	2,536	10,545	3,217	1,410	6,449	12,309	12,505	7,641	21,279	19,887	20,671	4,957
부	18,160	4,637	734	1,435	580	251	1,129	597	2,135	659	3,619	1,026	446	912
모	123,878	13,995	1,802	9,110	2,637	1,159	5,320	11,712	10,370	6,982	17,660	18,861	20,225	4,045
< 2018 >														
계	153,741	17,397	3,053	11,185	3,990	1,645	7,084	12,429	16,509	7,962	23,331	20,588	22,490	6,078
부	25,062	4,976	1,169	1,817	1,141	333	1,643	890	3,475	1,005	5,016	1,503	634	1,460
모	128,679	12,421	1,884	9,368	2,849	1,312	5,441	11,539	13,034	6,957	18,315	19,085	21,856	4,618
< 2019 >														
계	163,256	21,615	3,135	12,814	4,151	1,869	7,436	12,071	15,248	8,751	25,357	20,225	24,348	6,236
부	32,051	7,585	1,078	2,751	1,224	426	1,996	1,075	3,471	1,495	6,564	1,784	899	1,703
모	131,205	14,030	2,057	10,063	2,927	1,443	5,440	10,996	11,777	7,256	18,793	18,441	23,449	4,533
< 2020 >														
계	171,959	22,779	3,224	13,881	4,423	2,391	7,623	11,594	16,282	9,335	27,434	20,557	25,685	6,751
부	38,813	8,824	1,178	3,017	1,689	724	2,277	1,241	4,519	2,313	7,606	2,224	1,147	2,054
모	133,146	13,955	2,046	10,864	2,734	1,667	5,346	10,353	11,763	7,022	19,828	18,333	24,538	4,697
< 2021 >														
계	175,110	23,953	3,360	14,085	4,597	2,410	7,035	11,546	16,305	8,596	30,189	19,965	26,020	7,049
부	42,197	9,768	1,296	3,699	1,768	722	2,033	1,425	4,365	2,257	9,098	2,286	1,236	2,244
모	132,913	14,185	2,064	10,386	2,829	1,688	5,002	10,121	11,940	6,339	21,091	17,679	24,784	4,805
< 2022 ^p >														
계	199,976	28,331	4,022	16,817	5,694	2,756	8,214	12,351	18,746	9,861	32,846	21,139	29,652	9,547
부	54,240	12,272	1,696	4,852	2,527	827	2,565	2,070	5,415	2,947	10,980	2,925	1,822	3,342
모	145,736	16,059	2,326	11,965	3,167	1,929	5,649	10,281	13,331	6,914	21,866	18,214	27,830	6,205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기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1	12.4	0.2	12.2
2012	13.7	0.2	13.5
2013	15.2	0.2	15.0
2014	16.6	0.3	16.3
2015	17.9	0.4	17.5
2016	19.0	0.6	18.4
2017	20.7	1.2	19.5
2018	23.0	1.6	21.4
2019	25.2	2.1	23.1
2020	27.3	2.5	24.8
2021	29.7	3.0	26.7
2022 ^P	35.0	5.0	30.0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부	모	부&모**	출생아 수
2011	58,329	855	57,474	240	471,265
2012	66,505	986	65,519	328	484,550
2013	66,529	1,089	65,440	444	436,455
2014	72,157	1,392	70,765	536	435,435
2015	78,395	1,752	76,643	774	438,420
2016	77,089	2,375	74,714	1,108	406,243
2017	73,962	4,126	69,836	2,110	357,771
2018	75,227	5,278	69,949	2,706	326,822
2019	76,136	6,340	69,796	3,644	302,676
2020	74,275	6,871	67,404	4,828	272,337
2021	77,391	7,933	69,458	5,844	260,562
2022 ^P	87,092	12,407	74,685	12,888	249,186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 '부&모'는 출생아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집계한 것임

2-1-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계	58,329	19,583	31,383	6,733	630
부	855	100	392	288	75
모	57,474	19,483	30,991	6,445	555
< 2012 >					
계	66,505	19,764	37,693	8,307	741
부	986	93	463	350	80
모	65,519	19,671	37,230	7,957	661
< 2013 >					
계	66,529	17,123	39,147	9,377	882
부	1,089	96	494	409	90
모	65,440	17,027	38,653	8,968	792
< 2014 >					
계	72,157	16,991	42,790	11,336	1,040
부	1,392	107	657	486	142
모	70,765	16,884	42,133	10,850	898
< 2015 >					
계	78,395	18,076	44,961	13,962	1,396
부	1,752	131	780	659	182
모	76,643	17,945	44,181	13,303	1,214
< 2016 >					
계	77,089	16,809	43,159	15,501	1,620
부	2,375	191	1,054	896	234
모	74,714	16,618	42,105	14,605	1,386
< 2017 >					
계	73,962	15,564	39,277	17,293	1,828
부	4,126	358	1,771	1,595	402
모	69,836	15,206	37,506	15,698	1,426
< 2018 >					
계	75,227	14,711	38,743	19,542	2,231
부	5,278	443	2,111	2,168	556
모	69,949	14,268	36,632	17,374	1,675
< 2019 >					
계	76,136	13,672	38,944	20,779	2,741
부	6,340	582	2,352	2,681	725
모	69,796	13,090	36,592	18,098	2,016
< 2020 >					
계	74,275	12,697	38,114	20,443	3,021
부	6,871	633	2,608	2,857	773
모	67,404	12,064	35,506	17,586	2,248
< 2021 >					
계	77,391	12,143	39,959	21,589	3,700
부	7,933	657	3,012	3,176	1,088
모	69,458	11,486	36,947	18,413	2,612
< 2022 ^P >					
계	87,092	12,221	45,442	24,686	4,743
부	12,407	1,027	4,780	4,940	1,660
모	74,685	11,194	40,662	19,746	3,083

2-1-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계	58,329	36,686	6,589	11,227	3,245	582
부	855	530	100	160	57	8
모	57,474	36,156	6,489	11,067	3,188	574
< 2012 >						
계	66,505	43,068	7,919	11,643	2,945	930
부	986	626	120	165	63	12
모	65,519	42,442	7,799	11,478	2,882	918
< 2013 >						
계	66,529	43,739	8,172	11,144	2,676	798
부	1,089	702	128	191	60	8
모	65,440	43,037	8,044	10,953	2,616	790
< 2014 >						
계	72,157	47,396	9,501	11,879	2,826	555
부	1,392	919	187	206	74	6
모	70,765	46,477	9,314	11,673	2,752	549
< 2015 >						
계	78,395	51,422	10,772	12,743	3,037	421
부	1,752	1,145	273	236	87	11
모	76,643	50,277	10,499	12,507	2,950	410
< 2016 >						
계	77,089	50,674	10,682	12,388	2,888	457
부	2,375	1,553	346	319	139	18
모	74,714	49,121	10,336	12,069	2,749	439
< 2017 >						
계	73,962	48,308	10,635	11,865	2,815	339
부	4,126	2,892	533	486	199	16
모	69,836	45,416	10,102	11,379	2,616	323
< 2018 >						
계	75,227	48,450	11,042	12,436	2,914	385
부	5,278	3,704	730	612	210	22
모	69,949	44,746	10,312	11,824	2,704	363
< 2019 >						
계	76,136	47,773	11,617	13,265	3,136	345
부	6,340	4,232	975	805	299	29
모	69,796	43,541	10,642	12,460	2,837	316
< 2020 >						
계	74,275	46,274	11,376	13,271	3,064	290
부	6,871	4,612	1,061	901	274	23
모	67,404	41,662	10,315	12,370	2,790	267
< 2021 >						
계	77,391	48,828	11,803	13,550	2,949	261
부	7,933	5,541	1,137	938	291	26
모	69,458	43,287	10,666	12,612	2,658	235
< 2022 ^P >						
계	87,092	51,990	13,728	16,326	4,443	605
부	12,407	8,026	1,859	1,748	644	130
모	74,685	43,964	11,869	14,578	3,799	475

2-1-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1 >														
계	58,329	5,777	1,335	3,684	1,467	626	2,624	5,898	6,144	3,520	7,589	7,526	9,655	2,484
부	855	128	33	57	43	10	72	14	103	38	220	63	17	57
모	57,474	5,649	1,302	3,627	1,424	616	2,552	5,884	6,041	3,482	7,369	7,463	9,638	2,427
< 2012 >														
계	66,505	8,684	1,347	4,122	1,665	671	2,964	6,838	5,051	4,115	8,930	8,383	10,876	2,859
부	986	157	35	55	45	17	76	15	140	26	256	61	26	77
모	65,519	8,527	1,312	4,067	1,620	654	2,888	6,823	4,911	4,089	8,674	8,322	10,850	2,782
< 2013 >														
계	66,529	7,217	1,149	4,117	1,591	724	2,969	6,809	6,699	3,760	9,256	8,543	10,916	2,779
부	1,089	156	40	66	52	13	98	19	146	44	295	67	23	70
모	65,440	7,061	1,109	4,051	1,539	711	2,871	6,790	6,553	3,716	8,961	8,476	10,893	2,709
< 2014 >														
계	72,157	7,753	1,158	4,701	1,745	832	3,359	7,051	7,490	4,119	9,922	9,089	12,189	2,749
부	1,392	247	49	91	59	12	93	45	170	68	349	76	38	95
모	70,765	7,506	1,109	4,610	1,686	820	3,266	7,006	7,320	4,051	9,573	9,013	12,151	2,654
< 2015 >														
계	78,395	10,324	1,352	5,770	1,876	692	3,716	7,650	6,713	4,267	10,541	9,601	13,204	2,689
부	1,752	372	62	129	59	26	148	50	180	82	401	97	47	99
모	76,643	9,952	1,290	5,641	1,817	666	3,568	7,600	6,533	4,185	10,140	9,504	13,157	2,590
< 2016 >														
계	77,089	10,038	1,308	5,831	1,870	716	3,441	7,578	6,595	4,330	10,290	9,463	13,021	2,608
부	2,375	535	172	183	91	29	173	57	251	110	467	97	56	154
모	74,714	9,503	1,136	5,648	1,779	687	3,268	7,521	6,344	4,220	9,823	9,366	12,965	2,454
< 2017 >														
계	73,962	9,614	1,221	5,893	1,773	822	3,470	6,769	7,005	3,875	10,066	8,583	12,309	2,562
부	4,126	996	175	463	131	83	261	133	604	164	656	143	106	211
모	69,836	8,618	1,046	5,430	1,642	739	3,209	6,636	6,401	3,711	9,410	8,440	12,203	2,351
< 2018 >														
계	75,227	8,585	1,297	6,040	1,987	847	3,541	6,518	8,752	3,718	10,047	8,291	12,697	2,907
부	5,278	1,152	245	480	252	85	359	167	874	240	814	167	132	311
모	69,949	7,433	1,052	5,560	1,735	762	3,182	6,351	7,878	3,478	9,233	8,124	12,565	2,596
< 2019 >														
계	76,136	9,707	1,331	6,439	1,958	892	3,545	6,015	7,906	3,743	10,564	7,949	13,217	2,870
부	6,340	1,564	233	676	251	108	404	202	846	313	1,010	231	173	329
모	69,796	8,143	1,098	5,763	1,707	784	3,141	5,813	7,060	3,430	9,554	7,718	13,044	2,541
< 2020 >														
계	74,275	9,384	1,288	6,320	1,885	1,008	3,354	5,364	7,715	3,607	10,764	7,738	13,018	2,830
부	6,871	1,609	283	632	324	151	382	179	937	413	1,161	268	200	332
모	67,404	7,775	1,005	5,688	1,561	857	2,972	5,185	6,778	3,194	9,603	7,470	12,818	2,498
< 2021 >														
계	77,391	9,626	1,318	6,522	2,057	1,052	3,302	5,595	8,168	3,386	11,966	7,711	13,652	3,036
부	7,933	1,822	284	783	345	185	366	213	997	424	1,535	304	233	442
모	69,458	7,804	1,034	5,739	1,712	867	2,936	5,382	7,171	2,962	10,431	7,407	13,419	2,594
< 2022 [°] >														
계	87,092	11,271	1,654	7,644	2,434	1,176	3,941	5,579	8,975	3,993	12,918	7,775	15,441	4,291
부	12,407	2,698	475	1,220	629	240	638	400	1,347	692	2,219	466	427	956
모	74,685	8,573	1,179	6,424	1,805	936	3,303	5,179	7,628	3,301	10,699	7,309	15,014	3,335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기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1	88.0	61.8	26.1
2012	90.6	63.2	27.4
2013	92.7	64.4	28.3
2014	94.4	65.3	29.1
2015	96.2	66.0	30.1
2016	98.2	67.1	31.1
2017	99.6	67.4	32.2
2018	106.1	71.2	34.9
2019	109.5	72.8	36.7
2020	111.5	73.1	38.5
2021	114.9	74.2	40.7
2022 ^P	115.8	73.0	42.8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t년도 육아휴직 대상자 / t년도 출생아)*100임

2-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부	모	출생아 수
2011	414,577	291,398	123,179	471,265
2012	438,938	306,039	132,899	484,550
2013	404,481	280,906	123,575	436,455
2014	411,167	284,481	126,686	435,435
2015	421,604	289,500	132,104	438,420
2016	398,966	272,663	126,303	406,243
2017	356,402	241,208	115,194	357,771
2018	346,914	232,690	114,224	326,822
2019	331,409	220,350	111,059	302,676
2020	303,693	198,971	104,722	272,337
2021	299,467	193,355	106,112	260,562
2022 ^P	288,509	181,868	106,641	249,186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2-2-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계	414,577	83,920	207,760	100,411	22,486
부	291,398	45,346	141,347	84,002	20,703
모	123,179	38,574	66,413	16,409	1,783
< 2012 >					
계	438,938	79,708	225,642	107,927	25,661
부	306,039	42,546	150,849	88,933	23,711
모	132,899	37,162	74,793	18,994	1,950
< 2013 >					
계	404,481	64,201	210,573	103,734	25,973
부	280,906	34,251	138,632	84,081	23,942
모	123,575	29,950	71,941	19,653	2,031
< 2014 >					
계	411,167	59,235	215,695	108,471	27,766
부	284,481	31,291	141,285	86,398	25,507
모	126,686	27,944	74,410	22,073	2,259
< 2015 >					
계	421,604	59,305	213,409	118,227	30,663
부	289,500	30,912	138,346	92,353	27,889
모	132,104	28,393	75,063	25,874	2,774
< 2016 >					
계	398,966	54,125	193,317	120,294	31,230
부	272,663	27,926	123,791	92,728	28,218
모	126,303	26,199	69,526	27,566	3,012
< 2017 >					
계	356,402	47,038	161,609	117,094	30,661
부	241,208	23,667	101,535	88,440	27,566
모	115,194	23,371	60,074	28,654	3,095
< 2018 >					
계	346,914	44,927	149,507	120,598	31,882
부	232,690	23,112	91,907	89,343	28,328
모	114,224	21,815	57,600	31,255	3,554
< 2019 >					
계	331,409	40,280	138,932	118,976	33,221
부	220,350	20,630	83,153	87,362	29,205
모	111,059	19,650	55,779	31,614	4,016
< 2020 >					
계	303,693	35,767	127,231	107,744	32,951
부	198,971	17,975	74,372	77,898	28,726
모	104,722	17,792	52,859	29,846	4,225
< 2021 >					
계	299,467	33,107	125,241	106,583	34,536
부	193,355	16,400	70,999	76,301	29,655
모	106,112	16,707	54,242	30,282	4,881
< 2022 ^P >					
계	288,509	29,315	123,904	101,039	34,251
부	181,868	14,083	68,134	70,776	28,875
모	106,641	15,232	55,770	30,263	5,376

2-2-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계	414,577	197,880	78,504	101,914	33,124	3,155
부	291,398	131,332	61,746	73,350	23,154	1,816
모	123,179	66,548	16,758	28,564	9,970	1,339
< 2012 >						
계	438,938	212,040	82,561	105,844	34,647	3,846
부	306,039	139,080	64,195	76,082	24,644	2,038
모	132,899	72,960	18,366	29,762	10,003	1,808
< 2013 >						
계	404,481	198,339	75,678	94,571	32,110	3,783
부	280,906	129,401	58,913	67,751	22,846	1,995
모	123,575	68,938	16,765	26,820	9,264	1,788
< 2014 >						
계	411,167	201,907	77,301	95,743	32,886	3,330
부	284,481	131,398	59,705	68,155	23,359	1,864
모	126,686	70,509	17,596	27,588	9,527	1,466
< 2015 >						
계	421,604	206,303	77,931	98,351	35,899	3,120
부	289,500	132,990	59,559	69,691	25,458	1,802
모	132,104	73,313	18,372	28,660	10,441	1,318
< 2016 >						
계	398,966	193,415	72,441	92,780	37,233	3,097
부	272,663	123,944	55,145	65,509	26,286	1,779
모	126,303	69,471	17,296	27,271	10,947	1,318
< 2017 >						
계	356,402	173,093	63,081	81,724	35,459	3,045
부	241,208	110,349	47,402	56,837	24,808	1,812
모	115,194	62,744	15,679	24,887	10,651	1,233
< 2018 >						
계	346,914	164,613	59,604	81,138	38,598	2,961
부	232,690	104,261	44,374	55,958	26,458	1,639
모	114,224	60,352	15,230	25,180	12,140	1,322
< 2019 >						
계	331,409	157,750	56,420	77,036	37,259	2,944
부	220,350	99,848	41,316	52,337	25,216	1,633
모	111,059	57,902	15,104	24,699	12,043	1,311
< 2020 >						
계	303,693	147,373	50,514	70,215	33,953	1,638
부	198,971	92,204	36,282	46,831	22,830	824
모	104,722	55,169	14,232	23,384	11,123	814
< 2021 >						
계	299,467	149,811	48,423	66,941	32,748	1,544
부	193,355	93,152	34,084	43,507	21,795	817
모	106,112	56,659	14,339	23,434	10,953	727
< 2022 ^P >						
계	288,509	142,272	45,656	62,518	31,981	6,082
부	181,868	86,729	30,851	39,241	20,353	4,694
모	106,641	55,543	14,805	23,277	11,628	1,388

2-2-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자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1>														
계	414,577	93,691	26,282	41,547	13,168	5,489	21,456	22,517	54,222	15,762	33,252	28,365	33,038	25,788
부	291,398	81,669	22,191	31,559	10,472	4,109	16,508	11,759	42,039	10,067	20,649	10,560	9,608	20,208
모	123,179	12,022	4,091	9,988	2,696	1,380	4,948	10,758	12,183	5,695	12,603	17,805	23,430	5,580
<2012>														
계	438,938	115,690	26,509	44,898	13,450	5,544	21,940	24,424	43,293	17,232	35,574	29,194	34,904	26,286
부	306,039	99,051	22,452	33,993	10,506	4,059	16,879	12,700	33,140	10,799	21,491	10,747	10,012	20,210
모	132,899	16,639	4,057	10,905	2,944	1,485	5,061	11,724	10,153	6,433	14,083	18,447	24,892	6,076
<2013>														
계	404,481	99,939	22,948	41,410	12,070	5,783	20,947	22,575	47,513	15,457	33,175	26,665	31,934	24,065
부	280,906	86,350	19,459	31,324	9,389	4,160	16,195	11,630	35,690	9,695	19,801	9,576	9,310	18,327
모	123,575	13,589	3,489	10,086	2,681	1,623	4,752	10,945	11,823	5,762	13,374	17,089	22,624	5,738
<2014>														
계	411,167	102,355	22,446	42,519	11,817	6,682	20,919	23,046	48,760	16,064	33,254	26,544	32,694	24,067
부	284,481	88,163	19,031	31,790	9,096	4,799	15,873	11,946	36,221	9,978	19,668	9,575	9,699	18,642
모	126,686	14,192	3,415	10,729	2,721	1,883	5,046	11,100	12,539	6,086	13,586	16,969	22,995	5,425
<2015>														
계	421,604	112,161	21,968	46,412	11,364	6,919	22,384	23,179	43,141	16,985	34,310	26,736	33,792	22,253
부	289,500	94,888	18,453	34,074	8,533	4,983	17,033	12,010	31,888	10,827	20,250	9,797	9,948	16,816
모	132,104	17,273	3,515	12,338	2,831	1,936	5,351	11,169	11,253	6,158	14,060	16,939	23,844	5,437
<2016>														
계	398,966	104,346	21,084	45,709	11,114	7,867	20,324	22,493	39,213	15,799	32,367	25,402	32,159	21,089
부	272,663	87,872	17,766	33,592	8,341	5,572	15,536	11,686	28,532	9,765	19,077	9,351	9,616	15,957
모	126,303	16,474	3,318	12,117	2,773	2,295	4,788	10,807	10,681	6,034	13,290	16,051	22,543	5,132
<2017>														
계	356,402	89,428	18,399	41,667	9,813	8,057	17,992	19,660	36,187	14,185	30,415	22,694	28,987	18,918
부	241,208	74,967	15,493	30,150	7,341	5,514	13,412	10,284	26,085	8,844	17,884	8,512	8,686	14,036
모	115,194	14,461	2,906	11,517	2,472	2,543	4,580	9,376	10,102	5,341	12,531	14,182	20,301	4,882
<2018>														
계	346,914	79,396	18,307	40,728	10,511	8,912	17,322	18,425	41,038	13,567	28,757	22,076	28,297	19,578
부	232,690	66,398	15,046	29,015	7,908	5,948	12,884	9,758	29,127	8,536	16,752	8,481	8,446	14,391
모	114,224	12,998	3,261	11,713	2,603	2,964	4,438	8,667	11,911	5,031	12,005	13,595	19,851	5,187
<2019>														
계	331,409	77,523	18,238	39,237	9,762	9,138	16,351	17,311	35,405	13,452	28,968	20,224	27,836	17,964
부	220,350	64,002	15,101	27,623	7,301	6,029	12,038	9,307	24,786	8,618	16,657	7,757	8,237	12,894
모	111,059	13,521	3,137	11,614	2,461	3,109	4,313	8,004	10,619	4,834	12,311	12,467	19,599	5,070
<2020>														
계	303,693	67,211	16,764	36,091	9,142	8,363	14,991	15,413	32,754	12,192	28,881	18,922	26,765	16,204
부	198,971	54,878	13,956	25,024	6,876	5,468	10,800	8,419	22,616	7,742	16,545	7,148	7,883	11,616
모	104,722	12,333	2,808	11,067	2,266	2,895	4,191	6,994	10,138	4,450	12,336	11,774	18,882	4,588
<2021>														
계	299,467	66,052	16,143	34,799	9,398	7,924	14,933	15,853	31,159	11,213	30,431	18,812	26,553	16,197
부	193,355	53,629	13,377	23,795	6,977	5,019	10,682	8,622	20,553	7,080	17,214	7,215	7,703	11,489
모	106,112	12,423	2,766	11,004	2,421	2,905	4,251	7,231	10,606	4,133	13,217	11,597	18,850	4,708
<2022>														
계	288,509	61,217	13,360	32,774	8,934	7,145	14,788	14,409	28,148	10,886	31,235	16,953	27,071	21,589
부	181,868	48,842	10,726	21,732	6,524	4,430	10,324	7,737	17,813	6,694	17,600	6,371	7,421	15,654
모	106,641	12,375	2,634	11,042	2,410	2,715	4,464	6,672	10,335	4,192	13,635	10,582	19,650	5,935

* 기타 : 농업·농림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3-1.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부	모
2011	14.1	0.3	46.7
2012	15.2	0.3	49.3
2013	16.4	0.4	53.0
2014	17.5	0.5	55.9
2015	18.6	0.6	58.0
2016	19.3	0.9	59.2
2017	20.8	1.7	60.6
2018	21.7	2.3	61.2
2019	23.0	2.9	62.8
2020	24.5	3.5	64.4
2021	25.8	4.1	65.5
2022 ^P	30.2	6.8	70.0

2-3-2.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전체	14.1	23.3	15.1	6.7	2.8
부	0.3	0.2	0.3	0.3	0.4
모	46.7	50.5	46.7	39.3	31.1
< 2012 >					
전체	15.2	24.8	16.7	7.7	2.9
부	0.3	0.2	0.3	0.4	0.3
모	49.3	52.9	49.8	41.9	33.9
< 2013 >					
전체	16.4	26.7	18.6	9.0	3.4
부	0.4	0.3	0.4	0.5	0.4
모	53.0	56.9	53.7	45.6	39.0
< 2014 >					
전체	17.5	28.7	19.8	10.5	3.7
부	0.5	0.3	0.5	0.6	0.6
모	55.9	60.4	56.6	49.2	39.8
< 2015 >					
전체	18.6	30.5	21.1	11.8	4.6
부	0.6	0.4	0.6	0.7	0.7
모	58.0	63.2	58.9	51.4	43.8
< 2016 >					
전체	19.3	31.1	22.3	12.9	5.2
부	0.9	0.7	0.9	1.0	0.8
모	59.2	63.4	60.6	53.0	46.0
< 2017 >					
전체	20.8	33.1	24.3	14.8	6.0
부	1.7	1.5	1.7	1.8	1.5
모	60.6	65.1	62.4	54.8	46.1
< 2018 >					
전체	21.7	32.7	25.9	16.2	7.0
부	2.3	1.9	2.3	2.4	2.0
모	61.2	65.4	63.6	55.6	47.1
< 2019 >					
전체	23.0	33.9	28.0	17.5	8.3
부	2.9	2.8	2.8	3.1	2.5
모	62.8	66.6	65.6	57.2	50.2
< 2020 >					
전체	24.5	35.5	30.0	19.0	9.2
부	3.5	3.5	3.5	3.7	2.7
모	64.4	67.8	67.2	58.9	53.2
< 2021 >					
전체	25.8	36.7	31.9	20.3	10.7
부	4.1	4.0	4.2	4.2	3.7
모	65.5	68.7	68.1	60.8	53.5
< 2022 ^P >					
전체	30.2	41.7	36.7	24.4	13.8
부	6.8	7.3	7.0	7.0	5.7
모	70.0	73.5	72.9	65.2	57.3

2-3-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전체	14.1	18.5	8.4	11.0	9.8	18.4
부	0.3	0.4	0.2	0.2	0.2	0.4
모	46.7	54.3	38.7	38.7	32.0	42.9
< 2012 >						
전체	15.2	20.3	9.6	11.0	8.5	24.2
부	0.3	0.5	0.2	0.2	0.3	0.6
모	49.3	58.2	42.5	38.6	28.8	50.8
< 2013 >						
전체	16.4	22.1	10.8	11.8	8.3	21.1
부	0.4	0.5	0.2	0.3	0.3	0.4
모	53.0	62.4	48.0	40.8	28.2	44.2
< 2014 >						
전체	17.5	23.5	12.3	12.4	8.6	16.7
부	0.5	0.7	0.3	0.3	0.3	0.3
모	55.9	65.9	52.9	42.3	28.9	37.4
< 2015 >						
전체	18.6	24.9	13.8	13.0	8.5	13.5
부	0.6	0.9	0.5	0.3	0.3	0.6
모	58.0	68.6	57.1	43.6	28.3	31.1
< 2016 >						
전체	19.3	26.2	14.7	13.4	7.8	14.8
부	0.9	1.3	0.6	0.5	0.5	1.0
모	59.2	70.7	59.8	44.3	25.1	33.3
< 2017 >						
전체	20.8	27.9	16.9	14.5	7.9	11.1
부	1.7	2.6	1.1	0.9	0.8	0.9
모	60.6	72.4	64.4	45.7	24.6	26.2
< 2018 >						
전체	21.7	29.4	18.5	15.3	7.5	13.0
부	2.3	3.6	1.6	1.1	0.8	1.3
모	61.2	74.1	67.7	47.0	22.3	27.5
< 2019 >						
전체	23.0	30.3	20.6	17.2	8.4	11.7
부	2.9	4.2	2.4	1.5	1.2	1.8
모	62.8	75.2	70.5	50.4	23.6	24.1
< 2020 >						
전체	24.5	31.4	22.5	18.9	9.0	17.7
부	3.5	5.0	2.9	1.9	1.2	2.8
모	64.4	75.5	72.5	52.9	25.1	32.8
< 2021 >						
전체	25.8	32.6	24.4	20.2	9.0	16.9
부	4.1	5.9	3.3	2.2	1.3	3.2
모	65.5	76.4	74.4	53.8	24.3	32.3
< 2022 ^P >						
전체	30.2	36.5	30.1	26.1	13.9	9.9
부	6.8	9.3	6.0	4.5	3.2	2.8
모	70.0	79.2	80.2	62.6	32.7	34.2

2-3-4.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1 >														
전체	14.1	6.2	5.1	8.9	11.1	11.4	12.2	26.2	11.3	22.3	22.8	26.5	29.2	9.6
부	0.3	0.2	0.1	0.2	0.4	0.2	0.4	0.1	0.2	0.4	1.1	0.6	0.2	0.3
모	46.7	47.0	31.8	36.3	52.8	44.6	51.6	54.7	49.6	61.1	58.5	41.9	41.1	43.5
< 2012 >														
전체	15.2	7.5	5.1	9.2	12.4	12.1	13.5	28.0	11.7	23.9	25.1	28.7	31.2	10.9
부	0.3	0.2	0.2	0.2	0.4	0.4	0.5	0.1	0.4	0.2	1.2	0.6	0.3	0.4
모	49.3	51.2	32.3	37.3	55.0	44.0	57.1	58.2	48.4	63.6	61.6	45.1	43.6	45.8
< 2013 >														
전체	16.4	7.2	5.0	9.9	13.2	12.5	14.2	30.2	14.1	24.3	27.9	32.0	34.2	11.5
부	0.4	0.2	0.2	0.2	0.6	0.3	0.6	0.2	0.4	0.5	1.5	0.7	0.2	0.4
모	53.0	52.0	31.8	40.2	57.4	43.8	60.4	62.0	55.4	64.5	67.0	49.6	48.1	47.2
< 2014 >														
전체	17.5	7.6	5.2	11.1	14.8	12.5	16.1	30.6	15.4	25.6	29.8	34.2	37.3	11.4
부	0.5	0.3	0.3	0.3	0.6	0.3	0.6	0.4	0.5	0.7	1.8	0.8	0.4	0.5
모	55.9	52.9	32.5	43.0	62.0	43.5	64.7	63.1	58.4	66.6	70.5	53.1	52.8	48.9
< 2015 >														
전체	18.6	9.2	6.2	12.4	16.5	10.0	16.6	33.0	15.6	25.1	30.7	35.9	39.1	12.1
부	0.6	0.4	0.3	0.4	0.7	0.5	0.9	0.4	0.6	0.8	2.0	1.0	0.5	0.6
모	58.0	57.6	36.7	45.7	64.2	34.4	66.7	68.0	58.1	68.0	72.1	56.1	55.2	47.6
< 2016 >														
전체	19.3	9.6	6.2	12.8	16.8	9.1	16.9	33.7	16.8	27.4	31.8	37.3	40.5	12.4
부	0.9	0.6	1.0	0.5	1.1	0.5	1.1	0.5	0.9	1.1	2.4	1.0	0.6	1.0
모	59.2	57.7	34.2	46.6	64.2	29.9	68.3	69.6	59.4	69.9	73.9	58.4	57.5	47.8
< 2017 >														
전체	20.8	10.8	6.6	14.1	18.1	10.2	19.3	34.4	19.4	27.3	33.1	37.8	42.5	13.5
부	1.7	1.3	1.1	1.5	1.8	1.5	1.9	1.3	2.3	1.9	3.7	1.7	1.2	1.5
모	60.6	59.6	36.0	47.1	66.4	29.1	70.1	70.8	63.4	69.5	75.1	59.5	60.1	48.2
< 2018 >														
전체	21.7	10.8	7.1	14.8	18.9	9.5	20.4	35.4	21.3	27.4	34.9	37.6	44.9	14.8
부	2.3	1.7	1.6	1.7	3.2	1.4	2.8	1.7	3.0	2.8	4.9	2.0	1.6	2.2
모	61.2	57.2	32.3	47.5	66.7	25.7	71.7	73.3	66.1	69.1	76.9	59.8	63.3	50.0
< 2019 >														
전체	23.0	12.5	7.3	16.4	20.1	9.8	21.7	34.7	22.3	27.8	36.5	39.3	47.5	16.0
부	2.9	2.4	1.5	2.4	3.4	1.8	3.4	2.2	3.4	3.6	6.1	3.0	2.1	2.6
모	62.8	60.2	35.0	49.6	69.4	25.2	72.8	72.6	66.5	71.0	77.6	61.9	66.6	50.1
< 2020 >														
전체	24.5	14.0	7.7	17.5	20.6	12.1	22.4	34.8	23.6	29.6	37.3	40.9	48.6	17.5
부	3.5	2.9	2.0	2.5	4.7	2.8	3.5	2.1	4.1	5.3	7.0	3.7	2.5	2.9
모	64.4	63.0	35.8	51.4	68.9	29.6	70.9	74.1	66.9	71.8	77.8	63.4	67.9	54.4
< 2021 >														
전체	25.8	14.6	8.2	18.7	21.9	13.3	22.1	35.3	26.2	30.2	39.3	41.0	51.4	18.7
부	4.1	3.4	2.1	3.3	4.9	3.7	3.4	2.5	4.9	6.0	8.9	4.2	3.0	3.8
모	65.5	62.8	37.4	52.2	70.7	29.8	69.1	74.4	67.6	71.7	78.9	63.9	71.2	55.1
< 2022 ^o >														
전체	30.2	18.4	12.4	23.3	27.2	16.5	26.6	38.7	31.9	36.7	41.4	45.9	57.0	19.9
부	6.8	5.5	4.4	5.6	9.6	5.4	6.2	5.2	7.6	10.3	12.6	7.3	5.8	6.1
모	70.0	69.3	44.8	58.2	74.9	34.5	74.0	77.6	73.8	78.7	78.5	69.1	76.4	56.2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단위(%)

출생연도	성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1	전체	74.4	5.7	3.9	3.9	4.0	3.4	10.8	6.8	4.6
	부	15.1	10.6	7.5	7.6	8.1	9.6	16.2	17.6	15.9
	모	81.3	5.1	3.5	3.5	3.6	2.7	10.2	5.5	3.3
2012	전체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2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2013 ^P	전체	72.8	4.8	3.8	3.4	3.5	3.9	12.7	7.4	5.0
	부	12.0	9.9	7.6	8.5	9.5	10.3	19.0	17.2	15.0
	모	83.2	4.0	3.1	2.6	2.5	2.8	11.6	5.7	3.4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출생 전 및 자녀 나이가 8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음(관계법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3-2. 육아휴직 분할 사용 비중

단위(%)

출생연도	성별	계	미분할 (1회 휴직)	1회 분할 (2회 휴직)	2회 이상 분할 (3회 이상 휴직)
2011	전체	100.0	81.5	16.0	2.5
	부	100.0	91.6	7.7	0.7
	모	100.0	80.3	17.0	2.7
2012	전체	100.0	82.0	15.6	2.4
	부	100.0	90.9	8.4	0.7
	모	100.0	80.8	16.6	2.6
2013 ^P	전체	100.0	81.6	16.0	2.4
	부	100.0	91.0	8.1	0.9
	모	100.0	80.0	17.3	2.7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1)

출산연도	출산 전												출산일 단위(%)
	-360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2011	42.8	42.4	42.1	41.6	41.0	39.1	37.5	36.2	35.2	34.4	33.5	32.7	32.0
2012	44.5	44.1	43.7	43.2	42.6	40.5	38.8	37.5	36.4	35.5	34.6	33.8	33.1
2013	45.6	45.2	44.8	44.4	43.6	41.6	39.8	38.6	37.5	36.5	35.7	34.8	34.1
2014	46.5	46.0	45.5	45.1	44.4	42.3	40.5	39.2	38.2	37.2	36.3	35.4	34.8
2015	47.3	46.9	46.4	45.9	45.2	43.2	41.5	40.2	39.2	38.2	37.3	36.5	35.9
2016	47.9	47.5	47.1	46.7	46.0	44.0	42.4	41.1	40.1	39.1	38.2	37.4	36.7
2017	49.0	48.7	48.3	47.9	47.3	45.3	43.6	42.4	41.4	40.4	39.5	38.7	38.1
2018	50.2	50.0	49.6	49.2	48.6	46.7	45.1	43.9	43.0	42.1	41.3	40.5	39.8
2019	51.8	51.5	51.2	50.9	50.3	48.5	46.9	45.8	44.9	44.0	43.2	42.4	41.8
2020	54.1	53.8	53.5	53.1	52.5	50.7	49.2	48.1	47.1	46.2	45.4	44.6	44.0
2021 ^P	56.0	55.8	55.5	55.2	54.7	53.0	51.6	50.5	49.6	48.9	48.1	47.4	46.8
2022 ^P	58.7	58.4	58.1	57.7	57.2	55.6	54.3	53.4	52.6	51.9	51.1	50.4	49.7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2)

단위(%)

출산 연도	출산 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2011	31.7	31.5	30.9	30.8	30.8	30.9	31.1	31.2	31.3	31.5	31.6	31.7	31.8	31.7	30.6	30.3
2012	32.9	32.6	32.0	31.8	31.8	31.9	32.0	32.1	32.3	32.4	32.5	32.6	32.7	32.4	31.3	30.9
2013	33.9	33.5	32.9	32.8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7	33.4	32.2	31.8
2014	34.5	34.2	33.6	33.5	33.5	33.6	33.8	33.9	34.0	34.2	34.4	34.5	34.6	34.3	33.1	32.8
2015	35.7	35.4	35.0	34.9	35.0	35.1	35.3	35.4	35.6	35.8	36.0	36.1	36.3	36.0	34.8	34.6
2016	36.6	36.3	35.8	35.8	35.9	36.0	36.1	36.3	36.5	36.7	36.9	37.2	37.4	37.2	36.0	35.8
2017	37.9	37.6	37.2	37.2	37.3	37.4	37.6	37.8	38.0	38.2	38.5	38.6	38.9	38.7	37.6	37.5
2018	39.7	39.5	39.1	39.2	39.3	39.5	39.7	39.9	40.1	40.4	40.6	40.9	41.2	41.0	39.8	39.6
2019	41.6	41.4	41.1	41.2	41.3	41.4	41.5	41.7	41.9	42.1	42.3	42.5	42.7	42.4	41.2	41.0
2020	43.8	43.7	43.4	43.5	43.7	43.9	44.1	44.4	44.7	44.9	45.2	45.4	45.7	45.4	44.0	43.8
2021 ^P	46.7	46.5	46.3	46.3	46.4	46.6	46.9	47.1	47.3	47.5	47.8	48.0	-	-	-	-
2022 ^P	-	-	-	-	-	-	-	-	-	-	-	-	-	-	-	-

5. 2021년 출산휴가자

5-1. 2021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부	모
2019	78,234	5,445	72,789
2020	89,374	19,684	69,690
2021	87,893	17,471	70,422

5-2. 연령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9 >					
계	78,234	14,861	38,667	21,654	3,052
부	5,445	515	2,115	2,165	650
모	72,789	14,346	36,552	19,489	2,402
< 2020 >					
계	89,374	15,107	42,624	26,530	5,113
부	19,684	1,962	7,582	7,739	2,401
모	69,690	13,145	35,042	18,791	2,712
< 2021 >					
계	87,893	13,887	42,498	26,095	5,413
부	17,471	1,674	6,528	6,862	2,407
모	70,422	12,213	35,970	19,233	3,006

5-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9 >						
계	78,234	34,878	17,040	20,504	4,696	1,116
부	5,445	1,019	2,616	1,611	123	76
모	72,789	33,859	14,424	18,893	4,573	1,040
< 2020 >						
계	89,374	36,295	23,096	23,921	4,898	1,164
부	19,684	3,902	9,331	5,689	502	260
모	69,690	32,393	13,765	18,232	4,396	904
< 2021 >						
계	87,893	35,610	22,396	23,191	5,178	1,518
부	17,471	3,085	8,375	5,206	446	359
모	70,422	32,525	14,021	17,985	4,732	1,159

5-4. 종사 산업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9 >													
계	78,234	14,109	1,949	8,789	2,400	1,084	4,319	7,020	9,668	4,888	3,100	15,625	5,283
부	5,445	2,749	171	617	157	61	450	99	452	269	34	152	234
모	72,789	11,360	1,778	8,172	2,243	1,023	3,869	6,921	9,216	4,619	3,066	15,473	5,049
< 2020 >													
계	89,374	20,468	2,224	10,322	2,673	1,303	5,499	6,685	10,502	5,159	3,134	15,723	5,682
부	19,684	9,780	657	2,179	624	224	1,668	425	1,674	918	111	637	787
모	69,690	10,688	1,567	8,143	2,049	1,079	3,831	6,260	8,828	4,241	3,023	15,086	4,895
< 2021 >													
계	87,893	18,725	2,150	10,220	2,722	1,312	5,577	6,805	10,581	4,710	2,980	15,592	6,519
부	17,471	8,391	571	2,081	574	170	1,526	388	1,438	792	96	557	887
모	70,422	10,334	1,579	8,139	2,148	1,142	4,051	6,417	9,143	3,918	2,884	15,035	5,632

* 기타 : 농림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기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부 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56
2. 자주하는 질문	57
Q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57
Q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활용도	59
Q3. 잠·확정 체계 공표 이유	60
Q4.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의 의미	61
Q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수' 지표에서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	61
Q6. 육아휴직 실태 현실 반영도	61
Q7. 국외 사례	62
Q8. 관련 통계	63
Q9.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64
3. 한국표준산업분류	65

□ 작성 목적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92호)

□ 작성 연혁

- (2020.12.)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최초 공표
- (2021.12.)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2022. 8.) 육아휴직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2022.12.)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작성 주기 및 공표 시기

- 작성 주기: 연간
- 공표 시기: 작성기준 년 익년 12월 잠정(익년 12월 확정)

□ 모집단 및 작성 대상

- 모집단: 기준시점 현재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모
- 작성대상:
 -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및 공무원·교사
 - 고용보험 자료의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

□ 활용 행정자료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 인구동향 출생·사망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등 11종

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제도 >

(2022년 기준)

	근로자*	공무원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대상	·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공무원
자격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자녀 1명당 3년 이내
분할사용	· ('08. 6월 이후) 1회 분할 가능 · ('20. 12월 이후) 2회 분할 가능	· 제한 없음

* 근로자의 세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근로기준법)

-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이 되는 자녀 연령 및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변화해 왔음

< 민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연령		근로기간	
'88. 4월	· 생후 1년 미만(母만 가능)	'01. 11월	· 재직기간 1년 이상
'95. 8월	· 생후 1년 미만(父도 가능)	'18. 5월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06. 3월	· 생후 3년 미만		
'10. 2월	·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4. 1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

자녀연령		근로기간
'95. 1월	· 생후 1년 미만(부모 모두 가능)	· 관련 제한규정 없음
'02. 1월	· 생후 3년 미만 · 임신 또는 출산시 가능(母)	
'07. 3월	·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1. 5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관련 급여 및 수당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화여 왔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민간		공무원	
'01. 11월	· 육아휴직급여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월	· 육아휴직수당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2월	· 월 30만원	'03. 1월	· 월 30만원
'04. 2월	· 월 40만원	'04. 4월	· 월 40만원
'07. 4월	· 월 50만원	'07. 1월	· 월 50만원
'11. 1월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11. 1월	· 월봉급액의 40%(50~100만원)
'14. 10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5. 1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월봉급 100%, 상한 150만원)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17. 1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7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9월	· 첫 3개월 통상임금 80%(70~150만원)	'17. 9월	· 첫 3개월 월봉급 80%(70~15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70~12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월봉급 50%(70~120만원)
'20. 2월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20. 3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0. 8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2. 1월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70~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3개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상한 150만원	'22. 1월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70~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3개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상한 150만원

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그 활용도는 무엇인가요?

지표 산식 및 활용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규모 가늠

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 t\text{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t\text{년도 출생아수}} \times 100$$

-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규모 가늠

2-2.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t\text{년도 출생아수}} \times 100$$

-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실질 대상자의 규모 가늠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 t\text{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times 100$$

-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모 중 t년도에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 파악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 t~t+9년까지 t년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해당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및 분할사용 현황 분석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연도별 출산 모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년 기간 중 30일 간격 각 기준일에 행정자료 상 취업(상용/임시/사업소득) 기록이 있는 경우를 집계

- ☞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여성의 취업비중 변화 파악

5. 출산휴가자 수

-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일 기준 부와 모의 출산휴가자 규모 파악
-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 배우자 출산휴가(父)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만 집계

3. 육아휴직통계를 잠·확정 체계로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로 육아휴직자를 파악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시점과의 시차, 관련 행정자료 입수시기*, 통계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1년 시차)로 공표하고 있음

* 고용보험자료는 2개월 내외의 시차로 입수, 건강보험자료는 9개월 내외의 시차로 입수

< 잠정·확정 공표 체계 >

	2022년 육아휴직자 자료	
	잠정치	확정치
공표시점	2023년 12월	2024년 12월
활용 행정자료	(고용보험) '23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 중에 발생한 사람	(고용보험) '24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2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3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한계	(고용보험) '23.9월~'23.12월에 신고한 '22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고용보험) '24.9월~'24.12월에 신고한 '22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23. 1월 이후 신고한 '22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24. 1월 이후 신고한 '22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4.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당해연도에 이미 전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를 뜻함

(예시)

유형	육아휴직 사용 기간	'22년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A	'21년 12월 ~ '22년 11월	X
B	'22년 1월 ~ '22년 3월, '22년 9월 ~ '23년 1월	○
C	'21년 12월 ~ '22년 3월, '22년 9월 ~ '23년 1월	○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통계로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료 상 잦은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정확하기 때문임

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수' 지표와 같이 육아휴직자 수나 대상자 수를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출산이 심해지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 정도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6. 육아휴직통계가 육아휴직 실태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나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과의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와 확정치 모두 육아휴직 실태보다 과소하게 집계될 수밖에 없음
- 또한, 군인 등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실보다 과소하게 집계됨

7. 외국의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OECD에서 각 국가의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이나, 대상 자녀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남·여 각각)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
- 국가별 세부 기준(대상 자녀 나이, 분할사용 여부, 포괄범위, 유급·무급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수집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 시 유의 필요

< OECD 육아휴직 통계* (2020년 기준) >

(단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

국가	남	여	국가	남	여
한국	14.1	48.0	일본	5.5	44.4
노르웨이	111.7	145.8	오스트리아	4.6	124.9
덴마크	66.1	81.0	체코	5.2	281.1
독일	59.8	180.9	캐나다	18.1	58.9
룩셈부르크	89.3	78.2	포르투갈	77.4	100.9
리투아니아	36.0	111.1	폴란드	1.1	111.4
스웨덴	348.8	409.0	핀란드	60.9	140.4

* 출처: OECD > Family Database > PF2-2 > Parental leave users

8. 육아휴직과 관련된 통계는 무엇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명	육아휴직통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통계종류	가공	조사(표본)	보고
작성년도*	2010년 이후	2017년 이후	2012년 이후
작성주기	1년	1년	월
활용자료/ 표본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5,000개 사업체 표본조사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보험
포괄범위	민간 및 공공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군인 제외)	민간 (산업분류 A.농림어업 및 O.공공행정 제외)	민간 (고용보험 가입자)
집계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기준(초회 수급)

* 작성년도: 육아휴직자 수 관련 통계 작성 기준

9.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父)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시행령 별표1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 (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건설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